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편람

2024. 4.



행정안전부

목 차

Ⅰ. 평가 개요 ····· 1

1. 목적 및 근거 ····· 1
2. 대상기관 ····· 1
3. 평가항목 ····· 1
4. 수행 절차 및 일정 ····· 2
5. 2024년 개편 추진방향 ····· 4
6. 평가지표의 구성 ····· 5
7. 평가결과의 활용 ····· 6

Ⅱ. 평가지표 세부내용 ····· 7

1. 개방·활용 영역 ····· 7
2. 분석·활용 영역 ····· 20
3. 공유 영역 ····· 29
4. 품질 영역 ····· 37
5. 관리체계 영역 ····· 56

Ⅲ. FAQ ····· 59

[첨부]

1. 2024년 평가대상 기관 목록 ····· 60
2. 정성평가 작성양식 ····· 66

’23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1/3)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 : 폐지, □ : 신규)

2023년		2024년	
영역	지표명	지표명	영역
관리체계 (7)	Ⅰ-①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노력(5)	1-①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15)	개방·활용 (45)
	Ⅰ-② 기관 자체 공공데이터 교육 시행(1)	1-②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적기 처리율**(3)	
	Ⅰ-③ 공공데이터 관련 공통 교육 참여(1)	1-③ **공공데이터 제공 주기 준수율**(6)	
개방 (35)	Ⅲ-①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10)	1-④ **공공데이터 오류신고 적기 처리율**(3)	
	Ⅲ-②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10)	1-⑤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18)	
	Ⅲ-③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적기처리율(3)	1-⑤-1 활용도 낮은 개방데이터의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4)	
	Ⅲ-④ 개방데이터 오픈 포맷 비중(6)	1-⑤-2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우수사례(6)	
	Ⅲ-⑤ 개방데이터 제공 주기 준수율(6)	1-⑤-3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타 시책 노력(8)	
활용 (23)	Ⅳ-①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8)	1-⑥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미수행**(감점)	
	Ⅳ-②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노력 및 실적(7)	4-①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18) ※ 관리절차 준수, 예방적 품질관리, 데이터 표준관리, 데이터 구조관리, 데이터 연계관리	품질 (45)
	Ⅳ-③ 오류신고 적기처리율(4)	4-② **데이터 값 관리**(18) ※ 데이터 품질진단, 데이터 오류율	
	Ⅳ-④ 대국민 소통 및 데이터 수요자 의견수렴(4)	4-③ **진단결과 조치**(9)	
품질 (35)	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35)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결과		
	Ⅴ-① 데이터 관리체계(14)	5-① **추진기반 조성**(4)	관리체계 (10)
	Ⅴ-② 데이터 값 관리(21)	5-①-1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조직·인력 운영 여부(2)	
기타 (감점)	Ⅴ-① 직접제공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미개방	5-①-2 ’24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여부(2)	
	Ⅴ-②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미수행	5-②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교육 참여**(6)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교육, 품질관리 교육	
	Ⅴ-③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불수용		

’23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2/3)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 : 폐지, □ : 신규)

2023년		2024년	
영역	지표명	지표명	영역
관리체계 (7)	Ⅰ-① 부기관장 이상 주재 토론회 등 개최(2)	2-①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실적**(10)	분석·활용 (56)
	Ⅰ-②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예산 집행실적(2)	2-② **데이터 분석 실적**(12)	
	Ⅰ-③ 데이터기반행정 담당 조직 및 인력(2)	2-③ **데이터 분석결과의 정책활용 실적**(10)	
	Ⅰ-④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1)	2-④ **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 노력 및 실적**(16)	
공동활용 (28)	Ⅱ-①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실적(15)	2-④-1 데이터 분석·활용역량 진단 실시 여부(2)	
	Ⅱ-①-1 지정·자율 등록 데이터 등록이행률(15)	2-④-2 데이터 분석·활용역량 개선계획 수립(6)	
	Ⅱ-①-2 지정 및 자율등록 데이터 건수(가점)(4)	2-④-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 참여(8) ※ 전문교육, 실무자 교육, 관리자 교육	
	Ⅱ-② 공동활용 데이터 활용 실적(5)	2-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노력 및 실적**(8)	
	Ⅱ-③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8)	2-⑤-1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5)	
데이터분석 (40)	Ⅲ-① 데이터 분석·활용 실적(20)	2-⑤-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타 시책 노력(3)	
	Ⅲ-①-1 데이터 분석·활용 과제 발굴률(6)	3-① **공유데이터 등록이행률**(18)	공유 (40)
	Ⅲ-①-2 데이터 분석·활용 과제 분석 이행률 및 정책반영률(14)	3-② **공유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도**(6)	
	Ⅲ-①-3 다수기관 협업과제 실적(가점)(5)	3-③ **공유데이터 활용 실적**(6)	
	Ⅲ-② 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우수사례(20)	3-④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10)	
	Ⅲ-②-1 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실적(8)	5-① **추진기반 조성**(4)	관리체계 (4)
	Ⅲ-②-2 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의 적정성 등(12)	5-①-1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조직·인력 운영 여부(2)	
역량문화 (25)	Ⅳ-① 데이터 활용역량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10)	5-①-2 ’24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여부(2)	
	Ⅳ-①-1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개선계획 수립 여부(7)		
	Ⅳ-①-2 개선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3)		
	Ⅳ-② 데이터 활용역량 교육 참여 실적(10)		
	Ⅳ-③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문화 조성(5)		
	Ⅳ-③-1 활성화 문화 조성 추진 시책(2)		
	Ⅳ-③-2 시책의 효과성 및 활성화 기여도(3)		

● ● ’23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3/3) ● ●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변경사항
공공데이터 개방	개방·활용	• 피평가기관의 과도한 부담 해소 및 지표(1-①) 간 중복성 제거를 위해 ‘Ⅲ-②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 평가지표 **폐지** • 정책적 목적 달성으로 ‘Ⅲ-④ **개방데이터 오픈 포맷 비중**’ 평가지표 **폐지** • 평가의 형평성·실효성 제고 및 피평가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성지표***를 **간소화**하고 평가항목을 세부지표로 **명확하게 표현** * ‘Ⅲ-①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 ‘Ⅲ-② 기관별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계획 및 시행’, ‘Ⅲ-④ 활용지원 사례 대국민 홍보 노력 평가’
데이터 기반 행정	분석·활용	• **데이터 분석**과 **정책활용**의 **사례**를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insight.go.kr)에 **등록·공유**하고 **해당 등록 자료**로 **평가**하는 방식 적용 ※ 지표별 평가항목 명확화를 위해 ‘Ⅲ-②-1 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실적’ 지표를 ‘2-② 데이터 분석 실적’ 지표와 ‘2-③ 데이터 분석 결과의 정책활용 실적’ 지표로 분리 • 평가의 실효성·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Ⅲ-①-2 데이터 분석·활용 과제 분석 이행률 및 정책반영률**’ 및 ‘**Ⅲ-①-3 다수기관 협업과제 실적(가점)**’ 지표 **폐지** •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Ⅳ-①-2 개선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지표를 ‘Ⅳ-①-1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개선계획 수립 여부’ 지표에 **통합** ※ ‘Ⅳ-③-1 활성화 문화 조성 추진 시책’와 ‘Ⅳ-③-2 시책의 효과성 및 활성화 기여도’ 지표 통합
	공유	• ‘3-① **공유데이터 등록이행률**’ **지표**의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가점지표**인 ‘**Ⅲ-①-2 지정 및 자율등록 데이터 건수**’는 **폐지** • 기관에서 보유하는 데이터의 기관 간 공유·연계·활용 촉진을 위해 **‘중장기(’24~’26) 공유데이터 구축·관리 로드맵’ 수립 정도**에 대한 **평가** 실시 ※ ‘3-② **공유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도**’ 평가지표 **신설**
인프라	품질	• **평가대상 DB**를 **보유DB의 55%**로 확대(최소 12개, 최대 40개) ※ 12개 미만의 DB를 보유한 기관은 전체 보유 DB가 평가대상임 • 기존의 ‘**품질관리 계획수립**’ 항목(기존 지표 Ⅳ-①)은 신설된 ‘5-①-2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여부’ 평가지표로 **대체** • 평가의 실효성 및 중복성을 고려하여 ‘**오류신고 요구사항 분석 및 개선**’ 및 ‘**개방데이터 품질수준**’ 항목(기존 지표 Ⅳ-②) **제외** 등 **지표 간소화** ※ ‘데이터 구조 관리’ 항목의 경우, 각 기관에서 DB별 표준관리항목을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5월 구축 예정)에 등록한 내용을 점검하는 방식 적용(기존 산출물 점검방식 병행) • 3개 영역(관리체계/값 진단/결과 조치) 8개 지표로 간소화 ※ 기초, 기타공공, 시도교육청 : 진단기준(업무규칙 1개 이상 정의하면 만점), 비표준 연계 지표 면제
	관리체계	• 기관별 여건 차이, 평가부담·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기존 지표 Ⅰ-①)에서 ‘**예산집행 실적**’, ‘**부기관장 이상 주재 회의·토론회 개최**’ **제외** • 평가부담·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Ⅰ-② 기관 자체 공공데이터 교육 시행**’ 평가지표를 **공통교육* 수강여부 평가**(지표 5-②)로 **대체** * 행정안전부에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 예정(이용방법 추후 안내) •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련 **정책 기획** 및 **이행***을 평가체계와 연계하기 위해 ‘5-①-2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여부**’ 평가지표 **신설** * ’25년도 평가부터는 ‘전년도(’24년) 시행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지표 추가 검토

Ⅰ 평가 개요

◈ 개별 진행되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이하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을 **일원화된 체계**로 **통합 실시**

1. 목적 및 근거

○ (**목적**) 행정·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정책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를 통해 **관련 정책 개선** 및 **이행력 제고**

* 평가 실시 → 평가결과 기반의 정책 개선·보완 → 평가체계·지표에 정책 반영

○ (**법적근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시행령 제21조

2. 대상기관

○ **679개*** **행정·공공기관** ※ [첨부1] 2024년 평가대상 기관

* 중앙(46), 광역(17), 기초(226), 공기업·준정부(87), 지방공기업(46), 기타공공(240), 시도교육청(17)

■ 평가대상 기관 확대경과

-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18년~) : '18년 287개(중앙·지자체) → '19년 520개(일부 공공기관 확대) → '20년 535개 → '21년 548개 → '22년 570개 → '23년 696개(전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확대)
- **데이터기반행정 평가**('21년~) : '21년 288개(중앙·지자체) → '22년 467개(일부 공공기관 확대) → '23년 464개

3. 평가항목

○ 5개 영역, 20개 평가지표

분야	영역	평가지표(안)
공공데이터 개방	개방·활용 (공)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 ▲공공데이터 제공 적기 처리율, ▲공공데이터 제공 주기 준수율, ▲공공데이터 오류신고 적기 처리율,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미수행(감점)
데이터기반 행정	분석·활용 (행)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실적, ▲데이터 분석 실적, ▲데이터 분석결과의 정책활용 실적, ▲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 노력 및 실적,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노력 및 실적
	공유 (행)	▲공유데이터 등록이행률, ▲공유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도, ▲공유데이터 활용 실적,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인프라	품질 (공)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데이터 값 관리, ▲진단결과 조치
	관리체계 (공)(행)	▲추진기반 조성, ▲관련 교육 참여

※ (공) :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지표 / (행) :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지표

4. 수행 절차 및 일정

일정	수행내용	수행주체
평가편람 확정 (4월)	• 평가체계·지표 개편 및 **평가편람 배포**	행정안전부
⇩		
실적등록(~9월)	• 평가시스템에 **제출자료 업로드**	평가대상 기관
⇩		
평가실시(~12월)	• 전문기관(정량) 및 평가단(정성) **평가 수행** ※ 11월 중 이의신청 접수	평가단, 전문기관
⇩		
평가결과 공개 (~'25.3월)	• 평가결과 **사전공개(1월)** • 관련 위원회 보고 후 **등급결과 대국민 공개(3월 예정)**	평가단, 행정안전부

○ **(진행순서)** 실적 등록 → 평가실시 → 이의신청 → 결과공개

※ 실적 인정기간 :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23.10.1~'24.8.31.(11개월)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23.9.1~'24.8.31.(12개월) (단, 품질 영역은 '23.11.1~'24.9.30.(11개월))

- **(실적 등록)** 평가지표에 따라 **개별시스템**에서 실적이 **자동 집계**되거나 각 기관에서 **평가시스템***에 평가를 위한 **제출자료 업로드**

* '목록등록관리시스템(all.data.go.kr)' > '기관 시스템 연계'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데이터기반행정 평가' 탭으로 이동 > 지표별 실적 등록 (시스템 개편 중으로, 개편 완료 시 시스템 사용 방법 등 별도 안내 예정)

※ 일부 지표(공유, 개방 등)의 경우, 실적 인정기간 내 이행된 건 중 행정안전부 검토에 따른 보완을 실적 등록기간 중 완료한 건은 실적으로 인정

- **(평가 실시) 정량평가**는 **전문기관***, **정성평가**는 **평가점검단** 수행

*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NIA /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NIA(중앙), KLID(지방)

- **(이의신청 접수)** 실적 집계 오류 등 정량지표 평가결과에 대한 각 기관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평가오류 확인 및 정정

○ **(평가결과)** 각 기관이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100점)'와 '데이터기반행정 평가(100점)'에서 획득한 평가별 최종점수에 각각 등급 부여

- **(등급기준)**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

■ (예시)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에서 88점,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70점을 획득한 기관의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는 '우수' 등급, 데이터기반행정 평가는 '보통' 등급

- **(결과공개) 각 평가의 등급 결과**는 관련 위원회 보고 후 **대국민 공개**

<참고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 평가>

일정		수행내용	수행주체
평가대상 DB 선정 (~5월)		• 기관 보유DB 현행화 • 평가대상 DB 선정(보유DB의 55%)	평가대상 기관
⇩			
평가 진행	**기관별 자체평가** (5~9월)	• **기관별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수행** - 기관별·DB별 평가지표에 대한 제출자료 등록 - 평가대상 DB의 오류진단 및 조치	평가대상 기관 ※ (NIA) 진단도구 제공 → (기관) 진단 수행
	상시 확인·점검 (5월~10월초)	• **기관별 자체진단·평가 결과 확인·점검** - 기관별·지표별 평가 완료된 증빙자료에 대한 확인·점검 - 기관 자체평가 및 품질관리 활동 지원 - 기관 제출자료 검토 및 개선방향 가이드	공공데이터활용 지원센터(NIA)
⇩			
결과 확정 (~12월)		• **이의신청 접수(11월) 및 확인, 결과 확정**	품질 전문위원회, 행정안전부

○ **(대상선정)** 각 기관에서 **보유DB**를 **현행화**하고, 평가 DB 선정기준(보유DB의 55%)에 따라 **평가대상 DB 선정 및 확정**(~5월)

※ '24년 메타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수신된 정보와 '23년 보유DB 조사 정보를 비교*하여, 누락된 DB정보와 그 이후 생성·변경된 DB의 정보가 있으면 보유DB 현행화를 위해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수정·삭제해야 함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서 확인 가능(4월말)

○ **(자체평가)** 대상기관은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표에 따라 기관 **자체적으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완료된 지표에 대해서는 확인·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기간(5~9월) 중 지속적으로 보완***

* 9월 20일까지 자료 제출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9월 30일이 경과하더라도 행정안전부의 보완의견에 따라 한 번의 수정(보완의견 통보 후 7일(휴일포함) 이내) 가능

○ **(확인·점검)** 자체평가 결과(제출자료)를 **상시 확인·점검**(5월~10월초, NIA)

○ **(결과확정) 기관별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최종 평가결과 확정**(~12월)

5. 2024년 개편 추진방향

○ (평가체계 일원화) 법적으로 관리되는 **공공데이터 운영·관리 전반**(품질관리, 연계·공유 및 분석·활용, 개방 및 이용활성화)을 **하나의 체계**로 **평가**

※ 별도로 추진되던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와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통합 실시

- 평가 통합으로 인한 각 기관 업무담당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영역·평가지표**의 '공공데이터 제공'과 '데이터기반행정' 간 **구분 명확화**

※ 공공데이터 제공 : ①개방·활용, ②품질 / 데이터기반행정 : ③분석·활용, ④공유 / 공통 : ⑤관리체계

기존 (As-Is)	개선 (To-Be)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개방·이용활성화**'와 '**연계·공유·분석·활용**'에 대한 **분절적 관리** ➡	▸ **공공데이터**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 수준을 **일원화**된 방식으로 **체계적 평가·관리**
▸ 각 기관은 2개의 평가에 각각 대응하기 위해 **두 개**의 **시스템**과 **편람 숙지·이용 필요**	▸ **하나**의 **시스템**과 **편람**으로 평가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 간소화** 및 **평가부담 완화**

○ (정책 방향 반영) '23년 평가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수준 개선**이 **필요**한 **영역*** 및 **정책적 기조**에 따라 **강화**가 **필요**한 **영역****의 **배점 상향**

* '23년 평가점수가 가장 낮고 전년 대비 개선의 정도가 미미한 **'품질' 영역 강화**

** 디지털플랫폼정부(국정과제 11번),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등 주요정책의 근간(기관 간 칸막이 해소)임에도 전년 대비 점수 향상 비율이 가장 낮은 **'공유' 영역 강화**

○ (맞춤형 평가모델) **기관유형**별 **여건**(예산, 인력 등) 및 **정책 수준**에 맞게 **지표별 배점·평가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맞춤형 평가모델 전면 도입**

※ 기관 간 환경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의 경우, 기관유형 간 점수 격차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미흡기관 독려** 및 **형평성 제고** 필요성 증가

- '23년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기관유형**에 대해, **여건상** 동등한 추진이 **어려운 지표**의 배점은 **하향**하고, **기반 조성**에 관한 **지표**는 **상향***

* (하향) '품질', '분석' 관련 지표 / (상향) '역량강화', '개방', '공유' 관련 지표

< 지표별 맞춤형 평가 적용 방안 >

■ **(분석 영역)** 과제발굴·분석·정책활용 지표에 대해 기관유형별 차등적 평가기준 적용

■ **(품질 영역)** '비표준-표준 매핑정보 관리'·'품질진단' 관련 지표에 기관유형별 차등적 기준 적용

■ **(정성지표)** 기관유형별 여건·환경을 고려하여 우수사례, 기타 시책 노력 등 인정 조건 차별화

○ (지표 재정비) 평가의 **실효성**이 **낮은 지표*** 혹은 피평가기관의 부담만 가중하는 **유사·중복 지표****는 **폐지**하거나 하나의 지표로 **통합**

* '개방데이터 오픈 포맷 비중'은 이미 충분한 수준('21년 93.37% → '22년 97.2% → '23년 98.1%)으로 폐지

**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개선계획 수립 여부'와 '개선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지표 통합

6. 평가지표의 구성

○ 개방·활용, 분석·활용, 공유, 품질, 관리체계 5개 영역 및 20개 지표

< '24년 평가지표 배점표(안) >

※ (공) :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지표 / (행) :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지표

분야	영역 (200)	평가지표		기관 유형						
		지표명	방식	중앙	광역	기초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공공데이터 개방	1 개방·활용 (45) ※ 기초·기타공공·교육청 (51)	1-①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 (공)	정량	15	15	21	15	15	21	21
		1-②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적기 처리율 (공)	정량	3	3	3	3	3	3	3
		1-③ 공공데이터 제공 주기 준수율 (공)	정량	6	6	6	6	6	6	6
		1-④ 공공데이터 오류신고 적기 처리율 (공)	정량	3	3	3	3	3	3	3
		1-⑤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 (공)	정성	18	18	18	18	18	18	18
		1-⑥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미수행(감점) (공)	정량	-						
데이터기반행정	2. 분석·활용 (56) ※ 기초·기타공공·교육청 (52)	2-①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실적 (행)	정량	10	10	8	10	8	8	8
		2-② 데이터 분석 실적 (행)	정량	12	12	10	12	10	10	10
		2-③ 데이터 분석결과의 정책활용 실적 (행)	정량	10	10	8	10	8	8	8
		2-④ 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 노력 및 실적 (행)	정량 정성	16	16	18	16	18	18	18
		2-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노력 및 실적 (행)	정성	8	8	8	8	8	8	8
	3. 공유 (40) ※ 기초·기타공공·교육청 (44)	3-① 공유데이터 등록이행률 (행)	정량	18	18	20	18	20	20	20
		3-② 공유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도 (행)	정량	6	6	6	6	6	6	6
		3-③ 공유데이터 활용 실적 (행)	정량	6	6	6	6	6	6	6
		3-④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 (행)	정량	10	10	12	10	12	12	12
인프라	4. 품질 (45) ※ 기초·기타공공·교육청 (39)	4-①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공)	정량	18	18	15	18	18	15	15
		4-② 데이터 값 관리 (공)	정량	18	18	15	18	18	15	15
		4-③ 진단결과 조치 (공)	정량	9	9	9	9	9	9	9
	5. 관리체계 (14)	5-① 추진기반 조성 (공)	정량	4	4	4	4	4	4	4
		5-① 추진기반 조성 (행)	정량	4	4	4	4	4	4	4
		5-②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교육 참여 (공)	정량	6	6	6	6	6	6	6

7.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 공표**

-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결과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국무회의** 보고 후 기관별 **평가등급 대국민 공개**

- 데이터기반행정 평가결과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 후 기관별 **평가등급 대국민 공개**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표창**(대통령·국무총리·장관) **수여** 예정

※ 표창 규모는 유관부서와 협의 예정('25.上)

- **'1-⑥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미수행' 지표**에서 **감점받은 기관**의 경우 점수에 관계없이 **수여기관에서 제외**

○ 행정·공공기관 대상 **각종 평가지표**에 **평가결과 반영**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데이터기반행정 평가'의 **일부 정성지표*** 점수를 **정부·지자체 혁신평가**에 **반영**

* '1-⑤-2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우수사례', '1-⑤-3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타 시책 추진 노력', '2-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노력 및 실적'

※ '23년 평가의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는 정부혁신평가 5점, 지자체 혁신평가 5점, 데이터기반행정 평가는 정부 혁신평가 10점, 지자체 혁신평가 8점으로 반영되었으며, '24년 평가결과의 최종 반영 점수는 5월 중 확정될 예정

- **(공기업·준정부기관)**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데이터기반행정 평가'의 **전체점수(각 100점)**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비계량 1.5점)

* 경영관리 〉 2-⑷-② 민간수요 맞춤형 개방체계 구축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지방공기업)**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0.3점)'·'데이터기반행정 평가(협의중)'의 **전체점수(각 100점)**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

* 경영성과 〉 권장정책성과 〉 권장정책 목표 달성도 〉 ①-3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노력 및 성과

Ⅱ 평가지표 세부내용

1. 개방·활용 영역

< 평가목적 >

공공데이터 저변확대를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개방 관리 노력 수준을 평가

지표구성		배점							방식
		중앙	광역	기초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①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		**15**	**15**	**21**	**15**	**15**	**21**	**21**	정량
중장기 개방계획 **제출기관**	①-1 중장기 개방계획 이행률	10	10	14	10	10	14	14	
	①-2 '25년 개방계획 조기이행	5	5	7	5	5	7	7	
중장기 개방계획 **미제출/신규기관**	①-3 중장기 개방계획 수립	10	10	14	10	10	14	14	
	①-4 차기년도 개방계획 조기이행	5	5	7	5	5	7	7	
②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적기 처리율		**3**	**3**	**3**	**3**	**3**	**3**	**3**	
③ 공공데이터 제공 주기 준수율		**6**	**6**	**6**	**6**	**6**	**6**	**6**	
④ 공공데이터 오류신고 적기 처리율		**3**	**3**	**3**	**3**	**3**	**3**	**3**	
⑤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		**18**	**18**	**18**	**18**	**18**	**18**	**18**	정성
	⑤-1 활용도 낮은 개방데이터의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4	4	4	4	4	4	4	
	⑤-2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우수사례	6	6	6	6	6	6	6	
	⑤-3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타 시책 추진 노력	8	8	8	8	8	8	8	
⑥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미수행(감점)		-							정량

○ 「1-①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 지표

지표 정의	미개방 테이블의 개방을 위한 '25년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여부 및 개방계획 이행 정도 평가 ※ 중장기 개방계획 **제출기관은** 1-①-**1, 2**, **미제출/신규 평가대상 기관은** 1-①-**3, 4** 적용		
배점	**15점** (※ 기초, 기타공공, 시도교육청 21점)	**방식**	**정량**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서 집계)
담당자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최희진 연구관(044-205-2470)**, NIA **정준영 책임(053-230-1542)**		

[중장기 개방계획 제출기관 적용]

1-①-1. 중장기 개방계획 이행률(10점)

[평가 방법]

[평가기준]

■ 기관에서 제출한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의 **'23~'24년 계획 대비 누적 개방이행률** 평가

※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이행률은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완료하고,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의 '메타기반 개방계획 수립/이행' 메뉴에 **9월 30일까지 등록·승인**이 **완료**된 URL로 이행 실적 확인*

* 단, 9월 20일까지 공공데이터 개방이행 결과등록 신청은 완료하였으나, 이후 행정안전부의 개방 검토결과 품질 문제 등으로 반려(포털 개방검토 미통과)된 경우, 1회에 한해 수정(검토결과 통보 후 7일(휴일포함) 이내)하여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하지 못한 경우 개방 미이행으로 간주

■ **평가배점**

구 분	배 점*	
	A기관	B기관
'23년~'24년 개방계획 대비 누적이행률이 **100% 이상**	**10점**	**14점**
'23년~'24년 개방계획 대비 누적이행률이 **80% 이상 100% 미만**	**8점**	**11점**
'23년~'24년 개방계획 대비 누적이행률이 **60% 이상 80% 미만**	**6점**	**8점**
'23년~'24년 개방계획 대비 누적이행률이 **40% 이상 60% 미만**	**4점**	**5점**
'23년~'24년 개방계획 대비 누적이행률이 **0% 초과 40% 미만**	**2점**	**3점**
'23년~'24년 개방계획 대비 누적이행률이 **0%(개방 이행 없음)**	**0점**	**0점**

* **A기관** :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B기관** : 기초,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제출자료] 목록등록관리시스템 자료 집계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참고사항]

■ '24년도 개방계획이 0건인 경우 '24년도 개방계획을 재수립하고, '24년도에 개방을 이행하여야 점수 획득 가능

■ **[N/A 처리]** 메타정보 블라인드 기관(타기관 데이터 제공불가 요청 기관(국방부, 경찰청 등)), 기관 및 사업단 협의 결과 제외대상 기관(개방가능한 테이블이 없는 경우 등) **(점수산출방법 - p.59 FAQ 3번 참고)**

1-①-2. '25년 개방계획 조기이행(5점)

[평가 방법]

[평가기준]

■ 기관에서 제출한 **'25년 개방계획** 대비 **조기 개방 이행** 정도와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체 테이블***에 대한 **개방계획 검토 정도**에 대해 평가

* 중장기 개방계획에 따라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24.3월 기준)된 전체 테이블을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5월 중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5월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기관별 공공데이터 조기 개방 이행률은 '25년 개방계획으로 등록된 테이블('23년에 개방가능 건으로 등록한 건)을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완료하고,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의 '메타기반 개방계획 수립/이행' 메뉴에 **9월 30일까지 등록·승인**이 **완료**된 URL로 이행 실적 확인*

* 단, 9월 20일까지 공공데이터 개방이행 결과등록 신청은 완료하였으나, 이후 행정안전부의 개방 검토결과 품질 문제 등으로 반려(포털 개방검토 미통과)된 경우, 1회에 한해 수정(검토결과 통보 후 7일(휴일포함) 이내)하여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하지 못한 경우 개방 미이행으로 간주

■ **평가배점**

구 분		배 점*	
		A기관	B기관
'25년 개방계획 대비 30% 이상 조기 개방 이행	목록등록관리시스템 개방대상 테이블의 개방계획 검토 80% 이상 100% 이하	**5점**	**7점**
	60% 이상 80% 미만 검토	**4.5점**	**6점**
	50% 이상 60% 미만 검토	**4점**	**5.5점**
	0% 초과 50% 미만 검토	**3.5점**	**5점**
'25년 개방계획 대비 0% 초과 30% 미만 조기 개방 이행	80% 이상 100% 이하 검토	**3점**	**4.5점**
	60% 이상 80% 미만 검토	**2.5점**	**3.5점**
	50% 이상 60% 미만 검토	**2점**	**3점**
	0% 초과 50% 미만 검토	**1.5점**	**2점**
'25년 개방계획 대비 조기 개방 미이행(0%)		**0점**	**0점**

* **A기관** :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B기관** : 기초,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제출자료] 목록등록관리시스템 자료 집계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참고사항]

■ **'조기 개방 이행'**은 **'23년에 수립한 중장기 개방계획의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체 테이블에 대한 개방계획 검토'로 변동되는 개방계획은 내년도 개방 이행 평가에 반영

■ '25년도 개방계획을 0건으로 수립한 경우 개방계획을 재수립하고, '24년도에 조기 개방을 이행하여야 점수 획득 가능

■ **[N/A 처리]** 메타정보 블라인드 기관(타기관 데이터 제공불가 요청 기관(국방부, 경찰청 등), 기관 및 사업단 검토 결과 제외대상 기관(개방가능한 테이블이 없는 경우 등) **(점수산출방법 - p.59 FAQ 3번 참고)**

[중장기 개방계획 미제출 또는 신규 평가대상 기관 적용]

1-①-3. '25년 개방계획 수립(10점)

[평가 방법]

[평가기준]

■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체 테이블***에 대한 **개방계획 검토 정도**와 **'25년 개방계획 제출 여부**에 대해 평가

* 중장기 개방계획에 따라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24.3월 기준)된 전체 테이블을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5월 중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5월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기관별 '25년 개방계획은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의 '메타기반 개방계획 수립/이행' 메뉴에서 개방계획 및 목록구성이 9월 30일까지 등록·승인 완료된 건을 실적으로 인정*

* 단, 9월 20일까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등록 신청은 완료하였으나, 이후 행정안전부의 검토결과 반려된 경우, 1회에 한해 수정(검토결과 통보 후 7일(휴일포함) 이내)하여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하지 못한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

■ **평가배점**

구 분		배 점*	
		A기관	B기관
'25년 개방계획 수립	목록등록관리시스템 개방대상 테이블의 개방계획 검토 80% 이상 100% 이하	**10점**	**14점**
	60% 이상 80% 미만 검토	**8점**	**11점**
	50% 이상 60% 미만 검토	**6점**	**8점**
	0% 초과 50% 미만 검토	**4점**	**6점**
'25년 개방계획 미수립		**0점**	**0점**

* **A기관** :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B기관** : 기초,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제출자료] 목록등록관리시스템 자료 집계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참고사항]

■ **[10점 사례]**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현행화된 테이블 기준으로 기관의 개방가능한 테이블에 대한 '25년 개방계획(테이블 선정, 목록 구성)의 제출 및 등록·승인이 9.30.까지 완료되었고, 이와 함께 목록등록관리시스템 개방대상 테이블의 개방계획을 100% 검토한 경우

■ **[0점 사례]** 9.30.까지 '25년 공공데이터 개방계획(테이블 선정, 목록구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 **[N/A 처리]** 메타정보 블라인드 기관(타기관 데이터 제공불가 요청 기관(국방부, 경찰청 등), 기관 및 사업단 검토 결과 제외대상 기관(개방가능한 테이블이 없는 경우 등) **(점수산출방법 – p.59 FAQ 3번)**

1-①-4. '25년 개방계획 조기이행(5점)

[평가 방법]

[평가기준]

'25년 개방계획 대비 조기 개방 이행 정도 평가

※ '25년 개방계획으로 등록된 테이블을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완료하고,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의 '메타기반 개방계획 수립/이행' 메뉴에 9월 30일까지 등록·승인이 완료된 URL로 이행 실적 확인

■ **평가배점**

구 분	배 점*	
	A기관	B기관
'25년도 개방계획 대비 30% 이상 '24년 조기 개방 이행	**5점**	**7점**
'25년도 개방계획 대비 0% 초과 30% 미만 '24년 조기 개방 이행	**3점**	**4점**
'25년도 개방계획 대비 '24년 조기 개방 미이행(0%)	**0점**	**0점**

* **A기관** :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B기관** : 기초,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제출자료] 목록등록관리시스템 자료 집계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참고사항]

■ 9월 30일까지 공공데이터 개방이행 결과등록 신청은 완료하였으나, 품질 문제 등으로 포털 개방검토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수정(검토결과 통보 후 7일(휴일 포함) 이내)하여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하지 못한 경우 개방 미이행으로 간주

■ **[N/A 처리]** 메타정보 블라인드 기관(타기관 데이터 제공불가 요청 기관(국방부, 경찰청 등), 기관 및 사업단 검토 결과 제외대상 기관(개방가능한 데이터이 없는 경우 등) **(점수산출방법 - p.59 FAQ 3번 참고)**

○ 「①-②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적기 처리율」 지표

지표 정의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적기에 처리하였는지 여부 평가 ※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함		
배점	**3점**	**방식**	**정량**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서 집계)
담당자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장유희 주무관(044-205-2473)**, NIA **박성환 선임(053-230-1567)**		

[평가 방법]

[데이터 제공신청 적기처리율 계산식]

$$\left\{\frac{\text{기한내 신청처리 건수}}{\text{특정기간내 신청 접수 건수}}+\left(\frac{\text{기한초과 후 신청처리건수}}{\text{특정기간내 신청 접수 건수}}\times 0.3\right)\right\}\times 100(\%)$$

※ **기한** : 기관의 제공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연장 시 최대 20일(10+10일) 이내)
※ **신청 접수 건수** : 특정기간('23.8.4.~'24.8.31.) 내 제공 신청된 건('제공신청취소' 제외)
※ **신청 처리 기준** : 처리완료에 해당하는 "제공", "제공불가", "보완필요"인 경우

[평가기준]

■ **N/A 처리 :** '23.8.4.~'24.8.31. 기간 중 제공신청이 0건인 경우 **(점수산출방법 - p.59 FAQ 3번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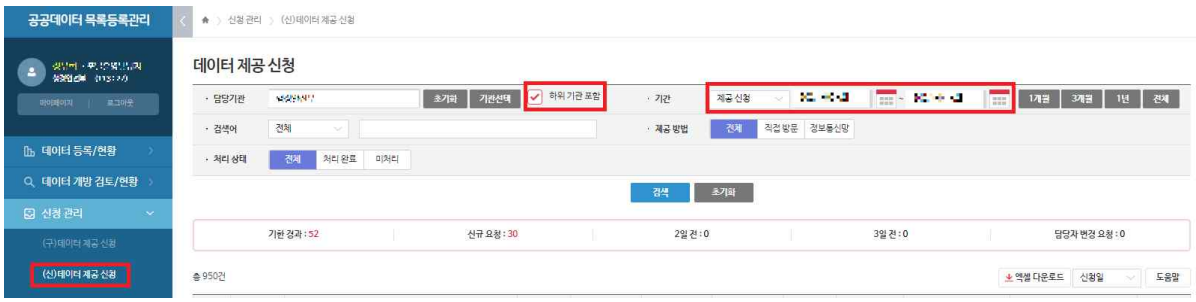
■ **평가배점**

세부기준	점 수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제공신청 적기처리율이 **90% 이상**	3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제공신청 적기처리율이 **80% 이상 90% 미만**	2.25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제공신청 적기처리율이 **70% 이상 80% 미만**	1.5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제공신청 적기처리율이 **60% 이상 70% 미만**	0.75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제공신청 적기처리율이 **60% 미만**	0점

[제출자료] 목록등록관리시스템 자료 집계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참고사항]

■ **[확인 방법]** 신청관리 > (신)데이터 제공 신청 > (조건 설정* 후) 검색



* **(설정조건)** 기간 : 제공신청; **'23.8.4.~'24.8.31**, 제공방법 : **전체**, 처리상태 : **전체**

※ 소속기관 실적 포함을 위해 **'하위기관 포함' 체크**, 평가실적은 '제공신청 취소'는 제외하여 집계됨

- 위 조건으로 검색, '처리일자'가 '처리기한' 이전이면 적기에 처리한 것으로 인정

○ 「①-③ 공공데이터 제공 주기 준수율」 지표

지표 정의	공공데이터포털 개방 데이터를 제공 주기(갱신주기)에 맞추어 제공하였는지 여부 평가		
배점	**6점**	**방식**	**정량**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서 집계)
담당자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장유희 주무관(044-205-2473)**, NIA **장라원 주임(053-230-1572)**		

[평가 방법]

[제공 주기 준수율 계산식]

$$\frac{\text{차기등록예정일이 '24년 8월 31일 이후인 목록수(파일)}}{\text{포털에 개방중이거나 개방검토요청한 전체 목록수(파일)}} \times 100(\%)$$

※ **평가대상** : '24.8.31.에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중이거나, '24.8.31. 이전에 등록·변경 개방검토를 요청한 데이터*
(링크데이터, 오픈API, 1회성 수시데이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24.9.30.에 등록·변경 개방이 완료되고 차기등록예정일이 '24.8.31.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

[평가기준]

■ **평가배점**

세부기준	점수
목록의 제공 주기 준수율이 **90% 이상**	**6점**
목록의 제공 주기 준수율이 **80% 이상 90% 미만**	**4.5점**
목록의 제공 주기 준수율이 **70% 이상 80% 미만**	**3점**
목록의 제공 주기 준수율이 **60% 이상 70% 미만**	**1.5점**
개방하는 모든 파일데이터의 제공 주기를 정의하고 있지 않거나, 목록의 제공 주기 준수율이 **60% 미만**	**0점**

■ **[부정행위 사례] 0점 처리**

- 데이터 내용의 최신화 없이 의도적으로 파일명만 변경·등록하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목적으로 주기성 데이터를 1회성 수시 데이터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필요시 기관명 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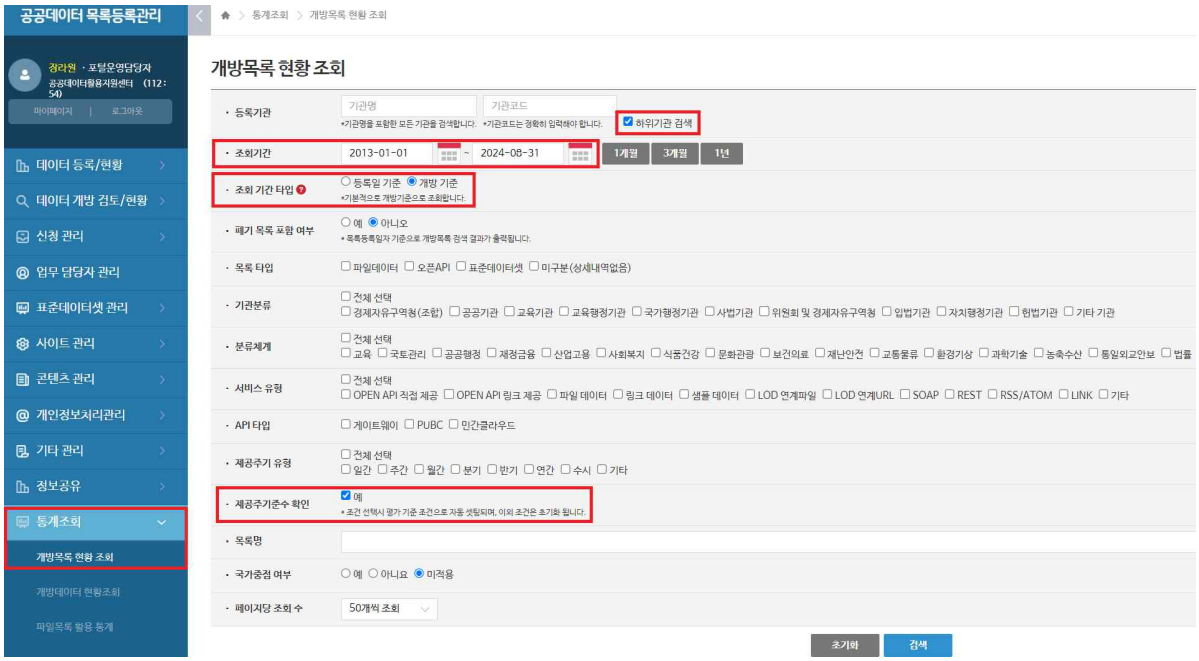
■ **N/A 처리 :** 위 기준기간('13.1.1.~'24.8.31.) 내에 개방데이터(파일데이터)가 0개인 경우

(점수산출방법 - p.59 FAQ 3번 참고)

[제출자료] 목록등록관리시스템 자료 집계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참고사항]

■ **[확인 방법]** 통계조회 > 개방목록 현황 조회 > (조건 설정* 후) 검색



* **(설정조건)** 조회기간 : **'13.1.1.~'24.8.31**, 제공주기준수 확인 : **체크**(체크시 링크데이터, 1회성데이터 등 제외)

※ 소속기관 실적 포함을 위해 **'하위기관 포함' 체크**

- 위의 조건으로 검색한 결과 중 '차기등록예정일'이 '24.8.31. 이후인 데이터는 제공 주기 준수로 판단

○ 「①-④ 공공데이터 오류신고 적기 처리율」 지표

지표 정의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기준기간('23.8.19.~'24.8.31.) 내에 접수된 공공데이터 오류신고 및 문의에 대하여 적기에 처리하였는지 여부 평가		
배점	**3점**	**방식**	**정량**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서 집계)
담당자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장유희 주무관(044-205-2473)**, NIA **박성환 선임(053-230-1567)**		

[평가 방법]

[공공데이터 오류신고 적기처리율 계산식]

$$\frac{\text{신고처리기한(영업일기준10일이내)내처리된오류신고및문의건수}}{\text{기준기간내신고접수된오류신고및문의건수}} \times 100(\%)$$

※ **평가대상** : 기준기간('23.8.19.~'24.8.31.) 내 접수된 데이터 오류신고 및 문의 건
(오류신고, 오픈API활용문의, 데이터문의 등 모든 유형의 문의가 해당되며, '접수취소'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오류신고·문의 등록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처리된 경우, 기한 내 처리로 인정**

[평가기준]

■ **평가배점**

구 분	배 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오류신고·문의 적기처리율이 90% 이상	3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오류신고·문의 적기처리율이 80% 이상	2.25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오류신고·문의 적기처리율이 70% 이상	1.5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오류신고·문의 적기처리율이 60% 이상	0.75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오류신고·문의 적기처리율이 60% 미만	0점

■ **N/A처리 :** 기준기간 내 오류신고 및 문의건수가 0인 경우 **(점수산출방법 - p.59 FAQ 3번 참고)**

[제출자료] 목록등록관리시스템 자료 집계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참고사항]

■ **[확인 방법] 신청관리 > 오류신고, 문의 및 개선요청**



* **(설정조건)** 검색기간 : **신고일자,'23.8.19.~'24.8.31.**, 기관 : **해당기관(자동설정)**, 데이터요청·데이터유형·처리상태 : **전체**
※ 소속기관 실적 포함을 위해 **'하위기관 포함' 체크** 필수

- 위의 조건으로 검색한 결과 중 "처리일자"가 "처리기한일자" 이내인 경우 적기 처리로 판단
 ※ **"처리상태"가 '접수취소'인 건은 제외**

○ 「1-⑤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 지표

지표 정의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국민·기업 등이 기관에서 개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노력 및 실적에 대해 정성적으로 평가		
배점	**18점** (①-4점, ②-6점, ③-8점)	**방식**	**정성** (평가시스템에 자료제출 필요)
담당자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신동렬 주무관(044-205-2476)**, NIA **김민규 책임(053-230-1547)**		

1-⑤-1. 활용도가 낮은 개방된 데이터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4점)

기관이 개방한 데이터 중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데이터의 원인 분석 수준과 저활용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수준을 평가

[평가 방법]

[평가기준]

■ 설문조사, 인터뷰, 간담회, 연구용역, 자체분석 등을 통한 기관 개방데이터 중 활용도 낮은 데이터의 **현황**과 저활용의 **원인(문제점,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분석 여부 및 수준**

■ 기관 개방데이터 중 저활용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여부 및 수준**

- (예시) 분석된 원인을 기반으로 데이터 정비*, 타 기관·민간과의 협력, 활용지원, 대국민 홍보, 설명회 개최 등 기관 개방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계획·방안 수립

* 개방된 통계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변경, 분류 세분화 등 데이터 변경·정비
(예시: 현재 지역별 교통사고 건수 개방 → 향후 교통사고 발생 세부장소·시간대·기간·유형·속성 등 상세데이터 개방)

[점수산정]

■ 기관 저활용 데이터의 원인분석 및 활용도 개선방안 마련 정도를 **4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

※ 개선방안 마련 여부와 방안의 내용에 대한 평가로, 그로 인한 실적 및 효과는 평가대상이 아님

[제출자료] 평가시스템에 아래의 자료 제출 필요**(첨부2-1 작성양식 참고)**

■ 저활용 데이터 활용도 제고 방안 보고서

■ 보고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공식 결재 및 보고 문서, 사진 등)

※ 모든 증빙을 한 파일로 묶어 PDF 형태로 1부 제출

[참고사항]

[주요 불인정 사례]

■ 실적 기준일('23.9.1.~'24.8.31.) 내의 실적이 아닐 경우

※ 공식 문서 내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어야만 인정

■ 공식적인 문서(공문, 보고, 결재 등) 증빙이 없는 경우

■ 보고서 작성 없이 증빙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1-⑤-2.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우수사례(6점)

기관에서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서비스 사례와 이와 관련하여 수행한 기관 지원 노력 평가

[평가 방법]

[평가기준]

■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서비스 우수사례

- 기관 데이터의 민간 활용사례 및 사례별 정성·정량적 파급효과 정도 평가

※ 신규 지표임을 감안하여 금년도 평가에서는 **실적 인정기간**을 **2년('22.9.1.~'24.8.31.)**으로 완화하며, 우수사례는 이 실적 인정기간 내에 **신규개발 및 재구축된 서비스만 인정**

- 설명회·수요조사 등 수요 파악, 데이터 개방·정비 등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해당 우수사례 서비스를 위한 기관의 지원 노력 평가

※ 우수사례 관련 기관의 지원 노력은 '22.9.1.~'24.8.31. 내 실적이어야 함

■ 민간서비스 우수사례는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의 경우 2~5건, '기초, 지방공기업, 기타공공, 시·도 교육청'의 경우 1~5건의 우수사례 제출 필요

※ **(평가 방식)** 작성되는 n건의 사례를 각 6/n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 후 합산

※ **(평가 예시)** ① 우수사례 3건 작성시 6점 만점을 기준으로 사례별 2점 만점으로 각 사례를 평가
② 우수사례를 1건 작성시 중앙/광역 등은 2건 작성을 기준으로 작성된 1건에 대해 3점 만점으로 평가
③ 5건을 초과하여 작성 시 앞에 작성한 5건만 평가를 진행하고, 여섯 번째 사례부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점수산정] 평가시스템에 아래의 자료 제출 필요

■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한 우수사례의 우수성 및 우수사례 관련 기관의 지원노력 정도를 **6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

※ 작성된 사례별로 6/n점 만점으로 평가 후 합산

[제출자료] 평가시스템에 아래의 자료 제출 필요**(첨부2-2 작성양식 참고)**

■ 개방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서비스 우수사례 보고서

■ 보고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공식 결재 및 보고 문서, 이메일, 사진 등)

※ 모든 증빙을 한 파일로 묶어 PDF 형태로 1부 제출

[참고사항]

[주요 불인정 사례]

■ 실적 기준일('22.9.1.~'24.8.31.) 내의 실적이 아닐 경우

※ 공식 문서 내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어야만 인정

■ 공식적인 문서(공문, 보고, 결재 등) 증빙이 없는 경우

■ 보고서 작성 없이 증빙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1-⑤-3.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타 시책 추진 노력(8점)

기관에서 개방중인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타 시책 추진 노력을 평가

[평가 방법]

[평가기준]

■ **활용지원 :** 기관에서 개방한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 (예시) 기업간담회·인터뷰·설명회* 등을 통한 활용지원 수요 파악, 민관협력 파트너십 운영,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해커톤·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

* 유관·상위기관 등과 공동 개최도 가능하나, 공동 개최 시 각 기관담당자의 참석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실적인정

■ **대국민 홍보 :** 기관 개방데이터 관련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노력

■ **기타 :**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기타 노력

※ (예시) 전국 통합성데이터 사업, 국가중점데이터 사업 등 데이터 개방 관련 사업 참여, 개방데이터 정비 결과 등

[점수산정]

■ 기관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실적 정도를 **8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

[제출자료] 평가시스템에 아래의 자료 제출 필요**(첨부2-3 작성양식 참고)**

■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타 시책 추진 보고서

■ 결과보고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공식 결재 및 보고 문서, 사진 등)

※ 모든 증빙을 한 파일로 묶어 PDF 형태로 1부 제출

[참고사항]

[주요 불인정 사례]

■ 실적 기준일('23.9.1.~'24.8.31.) 내의 실적이 아닐 경우

※ 공식 문서 내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어야 함

■ 공식적인 문서(공문, 보고, 결재 등) 증빙이 없는 경우

■ 보고서 작성 없이 증빙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 1-⑤-1,2 지표에 제출한 실적과 **중복**될 경우, '1-⑤-3. 기타 시책 노력' 지표에서 불인정

○ 「①-⑥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미수행」 지표(감점)

지표 정의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대상 기관의 정비 수행 여부 평가		
배점	**-1점 / 건** (감점)	**방식**	**정량** ('행정안전부 보유자료'로 평가)
담당자	행안부 공공서비스통합과 **이주희 사무관(044-205-2726)**, NIA **김규리 선임(053-230-1509)**		

[평가 방법]

[평가기준]

- **평가대상 :** '24년 신규 정비 권고 및 '17~'23년 재권고 대상(앱서비스)에 적용
- **점수산정 :**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정비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미수행한 정비 대상 서비스 하나당 1점씩 감점**

[제출자료] 행정안전부 보유자료로 판단하므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참고사항]

-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정비를 하지 않겠다고 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미수행한 것으로 판단
- '24년 신규 권고 대상 중 정비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정비 미수행 기관에서 제외

 * 서비스 폐지, 중복기능 제거, 고도화 중지, 기술이전, 상생협력

2. 분석 · 활용 영역

< 평가목적 >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내부 서비스 및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확산한 노력을 평가

지표구성	배점							방식
	중앙	광역	기초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①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실적	10	10	8	10	8	8	8	정량
② 데이터 분석 실적	12	12	10	12	10	10	10	
③ 데이터 분석결과의 정책활용 실적	10	10	8	10	8	8	8	
④ 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 노력 및 실적	16	16	18	16	18	18	18	
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노력 및 실적	8	8	8	8	8	8	8	정성

○ 「2-①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실적」 지표

지표 정의	데이터 기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관 내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실적 평가		
배점	**10점** (※ 기초, 지방공기업, 기타공공, 시도교육청 8점)	**방식**	**정량** (평가시스템에 자료제출 필요)
담당자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 **이선영 사무관(044-205-2296)**, NIA **임수혁 책임(053-230-1952)**		

[평가 방법]

[평가기준]

■ "데이터 분석의 목적, 필요 데이터, 분석방법, 활용방안(계획)" 4개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공식문서(내부결재, 대내외시행 공문 등)가 있어야만 실적으로 인정*

* 기관 내부 수요에 따라 자체 발굴하거나 외부 지원사업에 공모한 건에 한함

[점수산정]

■ **평가산식 :** $\frac{\text{실적 과제 수}}{\text{목표 과제 수}} \times \text{배점}$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목표 과제 수 설정 방식 : 정원* 대비 목표치 설정**(기관유형별 상이한 계수 적용)

* 기관 전체 정원이 아니라, **본부·본청·본사·본원 정원**으로 한정

1) 중앙
 - 정원 × 0.018 = 목표 과제 수
2) 공기업·준정부기관
 - 정원 × 0.02 = 목표 과제 수
3) 지자체(광역·기초), 지방공기업, 기타 공공기관(기존 평가대상 기관)
 - 정원 × 0.008 = 목표 과제 수
4) 기타 공공기관(신규), 시·도 교육청
 - 정원 × 0.004 = 목표 과제 수

※ 목표 과제 수는 정수 단위로 반올림(단, 목표 과제 수가 1 미만일 경우 목표 과제 수를 1로 설정)

[제출자료] 평가시스템에 아래의 자료 제출 필요

■ 총괄 개요 파일**(첨부2-4 작성양식 참고)** : 2-①, ②, ③의 과제목록* 일괄 작성

*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에 등록한 건 중 과제목록으로 제출된 건만 2-②, ③의 실적으로 인정

■ 발굴 실적 증빙자료*(내부결재, 대내외시행 공문 등 공식자료)

* "**데이터 분석의 목적, 필요 데이터, 분석방법, 활용방안(계획)**" 4개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실적으로 인정

※ 모든 발굴과제 증빙자료를 한 파일로 묶어 PDF 형태로 1부 제출 (예시 : ① 발굴과제1, ② 발굴과제2,,,)

■ 정원 확인 증빙자료

※ "본부(본청/본원/본사) 정원, 제외직군·직렬의 명칭" 증빙 필요

- 예시 : 직제 시행규칙, 조례, 공시(ALIO, 클린아이시스템), 기관 내부자료(내부결재 공문, 정보시스템 캡쳐, 총무·인사 부서로부터 받은 이메일 등 공식적인 인정이 가능한 자료) 등 본부·본청·본원·본사 정원이 기재된 공식자료
(정원 필수 포함 직군·직렬 : 일반직, 사무직, 전산직, 회계직, 행정직, 연구직 등
정원 제외 가능 직군·직렬 : (시설·미화·경비 등) 공무직, 상담직, 소방직 등 비사무직)

[참고사항]

■ **[실적인정기간]** 2023년 10월 1일 ~ 2024년 8월 31일 내 발굴 과제

■ **[주요 불인정 사례]**

- 증빙자료 없이 발굴과제에 대해 목록만을 제출하는 경우
- 정보시스템 구축, DB 구축 등과 같이 데이터 분석과 무관한 사업 실적을 제출한 경우

※ 다만, 본 사업 내 데이터 분석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면 인정

-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 기관 외부에서 접수된 분석과제 불인정

■ 공모사업, 지원사업 등을 통해 타 기관의 분석과제를 용역사업으로 수행한 경우는 타 기관 실적만 인정함

※ (예시) NIA 공공빅데이터분석사업

사업공모	NIA
↓↓↓	
사업계획서 제출	각 기관 → NIA
↓↓↓	
사업 수행기관 2개 확정(A기관, B기관)	NIA
↓↓↓	
사업수행을 위한 업체 선정	NIA
↓↓↓	
사업예산 집행	NIA → 수행업체
↓↓↓	
사업수행	NIA ↔ A기관, B기관 ↔ 수행업체

☞ NIA는 실적 미인정, A기관 및 B기관은 실적 인정

■ 동일 주제로 다수 건의 과제발굴 실적으로 제출할 경우, 실적은 1건으로 인정함

※ '한식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예시1) 1. 회귀분석 실시, 2. 상관관계 분석 진행 ☞ **1개 과제 인정**
(예시2) 1. 한식 수출 데이터 분석 및 활용방안,
2. 해외 한식당 메뉴 매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안,
3. 한국 방문 외국인 선호 메뉴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안
☞ **3개 과제 인정**

○ 「2-② 데이터 분석 실적」 지표

지표 정의	데이터를 수집·결합·분석하여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 분석결과를 도출한 실적 평가		
배점	**12점** (※ 기초, 지방공기업, 기타공공, 시도교육청 10점)	**방식**	**정량**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에서 집계)
담당자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 **이상일 사무관(044-205-2289)**, NIA **임수혁 책임(053-230-1952)**		

[평가 방법]

[평가기준]

■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insight.go.kr)에 데이터 분석사례 등록 시 필수 작성 항목이 입력되어 등록된 분석과제 제출 건수로 평가

※ 분석시스템에 기관사례 등록 첨부문서의 공개/비공개를 선택하되, 비공개 시 사유 명시 필요

[필수작성 항목] ① 분석 일자, ② 분석 목표, ③ 활용 데이터, ④ 분석 방법 및 결과 내용, ⑤ 분석결과 활용 및 활용계획, ⑥ 결과보고서(메모보고, 내부결재 등 공식적인 문서)

※ 세부 작성 예시 및 등록 방법은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insight.go.kr)' 등록 화면을 통해 안내

[점수산정]

■ **평가산식 :** $\frac{\text{실적 과제 수}}{\text{목표 과제 수}} \times \text{배점}$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목표 과제 수 설정 방식 : 정원* 대비 목표치 설정**(기관유형별 상이한 계수 적용)

* 기관 전체 정원이 아니라, **본부·본청·본사·본원 정원**으로 한정

1) 중앙
 - 정원 × 0.018 = 목표 과제 수
2) 공기업·준정부기관
 - 정원 × 0.02 = 목표 과제 수
3) 지자체(광역·기초), 지방공기업, 기타 공공기관(기존 평가대상 기관)
 - 정원 × 0.008 = 목표 과제 수
4) 기타 공공기관(신규), 시·도 교육청
 - 정원 × 0.004 = 목표 과제 수

※ 목표 과제 수는 정수 단위로 반올림(단, 목표 과제 수가 1 미만일 경우 목표 과제 수를 1로 설정)

[제출자료]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므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단, 2-①의 제출자료 중 과제목록에 포함된 건만 실적으로 인정)

[참고사항]

■ **[실적인정기간]** 2023년 10월 1일 ~ 2024년 8월 31일 내 분석 수행 과제
(시스템 등록도 이 기간 동안 완료되어야 함)

■ **[주요 불인정 사례]**

- '22~'23년 실태점검에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과제를 제출한 경우
- 데이터셋·시스템 구축사업 등 데이터 분석 내용을 확인 불가한 경우
 ※ 다만, 상기 사업 내 데이터를 분석한 과업에 대한 명확한 증빙 제출 시 인정
- 단순 수치 비교, 그래프 시각화만 진행한 경우

■ 공모사업, 지원사업 등을 통해 타 기관의 분석과제를 용역사업으로 수행한 경우는 타 기관 실적만 인정함

※ (예시) NIA 공공빅데이터분석사업

사업공모	NIA
⇩	
사업계획서 제출	각 기관 → NIA
⇩	
사업 수행기관 2개 확정(A기관, B기관)	NIA
⇩	
사업수행을 위한 업체 선정	NIA
⇩	
사업예산 집행	NIA → 수행업체
⇩	
사업수행	NIA ↔ A기관, B기관 ↔ 수행업체

☞ NIA는 실적 미인정, A기관 및 B기관은 실적 인정

■ 동일 주제로 다수 건의 과제발굴 실적으로 제출할 경우, 실적은 1건으로 인정함

※ '한식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예시1) 1. 회귀분석 실시, 2. 상관관계 분석 진행 ☞ **1개 과제 인정**
(예시2) 1. 한식 수출 데이터 분석 및 활용방안,
2. 해외 한식당 메뉴 매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안,
3. 한국 방문 외국인 선호 메뉴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안
☞ **3개 과제 인정**

○ 「2-③ 데이터 분석결과의 정책활용 실적」 지표

지표 정의	데이터를 수집·결합·분석하여 해당 과제 목적에 맞게 분석한 결과를 기관의 정책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등에 활용한 실적을 평가한다.		
배점	**10점** (※ 기초, 지방공기업, 기타공공, 시도교육청 8점)	**방식**	**정량**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에서 집계)
담당자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 **윤인식 서기관(044-205-2286)**, NIA **임수혁 책임(053-230-1952)**		

[평가 방법]

[평가기준]

■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insight.go.kr)에 등록된 데이터 분석사례와 함께 등록된 정책활용 사례로 평가

※ 분석시스템에 기관사례 등록 첨부문서의 공개/비공개를 선택하되, 비공개 시 사유 명시 필요

[필수작성 항목] ① 정책활용 내용, ② 정책활용 결과서(메모보고, 내부결재 등 공식적인 문서)

※ 세부 작성 예시 및 등록 방법은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insight.go.kr)' 등록 화면을 통해 안내

[점수산정]

■ **평가산식 :** $\frac{\text{실적 과제 수}}{\text{목표 과제 수}} \times \text{배점}$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목표 과제 수 설정 방식 : 정원* 대비 목표치 설정**(기관유형별 상이한 계수 적용)

* 기관 전체 정원이 아니라, **본부·본청·본사·본원 정원**으로 한정

1) 중앙
 - 정원 × 0.0108 = 목표 과제 수
2) 공기업·준정부기관
 - 정원 × 0.0108 = 목표 과제 수
3) 지자체(광역·기초), 지방공기업, 기타 공공기관(기존 평가대상 기관)
 - 정원 × 0.002 = 목표 과제 수
4) 기타 공공기관(신규), 시·도 교육청
 - 정원 × 0.001 = 목표 과제 수

※ 목표 과제 수는 정수 단위로 반올림(단, 목표 과제 수가 1 미만일 경우 목표 과제 수를 1로 설정)

[제출자료]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므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단, 2-①의 제출자료 중 과제목록에 포함된 건만 실적으로 인정)

[참고사항]

■ **[실적인정기간]** 2023년 10월 1일 ~ 2024년 8월 31일 내 정책활용 과제
(시스템 등록도 이 기간 동안 완료되어야 함)

■ **[주요 불인정 사례]**

- 데이터 분석없이(또는 점검단에서 데이터 분석 실적 미인정) 정책반영 과제를 제출한 경우
- '22~'23년 실태점검에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과제를 제출한 경우

※ 기존에 정책활용 미인정 과제 중 금번 실적인정기간에 실제 정책에 활용한 증빙이 있는 경우는 인정

- 보도자료 기반으로 실적 제출 시, 정책활용 계획에 대한 내용일 경우
- 제출한 증빙자료로 정책활용에 대한 내용 확인이 불가한 경우

○ 「②-④ 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 노력 및 실적」 지표

지표 정의	데이터 분석·활용역량 진단 실시 및 개선계획 수립 여부, 데이터기반행정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참여 실적 등		
배점	**16점** (※ 기초, 지방공기업, 기타공공, 시도교육청 18점)	**방식**	**정량·정성** (평가시스템에 자료제출 필요)
담당자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 **심규석 사무관(044-205-2291)**, **(역량진단)** NIA **조용탁 수석(053-230-1953)**, **(교육)** NIA **이연주 수석(053-230-1579)**		

[평가 방법]

[평가기준]

■ **[평가배점]**

번호	세부지표	배 점*	
		A기관	B기관
1	데이터 분석·활용역량 진단 실시 여부**	2점	2점
2	데이터 분석·활용역량 개선계획 수립(정성평가)	6점	6점
3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교육(오프라인만 인정) 2인*** 이상 이수	4점	4점
4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실무자 교육) 직원 정원 대비 50% 이상 교육 이수 여부	2점	3점
5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관리자 교육) 보직자·관리자 직급 정원 대비 30% 이상 교육 이수 여부	2점	3점

* **A기관** :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기관, **B기관** : 기초,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 기관 정원의 50% 이상 또는 100명 이상 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 2인 중 데이터기반행정 실무담당자 1인 필수포함이며 나머지 1인은 실무담당자와 동일 부서(중앙부처 기준 '과') 직원이어야 함. 단, 행안부 주관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과정」 이수 시 수료 인원에 관계없이 4점 인정

※ 역량 진단(1번), 실무자 교육(4번), 관리자 교육(5번)의 경우, **본부·본청·본사·본원 정원**으로 한정

[제출자료] 평가시스템에 아래의 자료 제출 필요 **(첨부2-5 작성양식 참고)**

■ ①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 노력 및 실적 개요서, ②데이터 분석·활용역량 진단 결과 및 개선계획 보고서, ③전문교육 수료 증빙(이수증 등), ④역량강화 교육이수자(직원) 및 관리자 명단, ⑤교육대상자 기준 증빙*

* "본부(본청/본원/본사) 정원, 일반직원(비보직자) 및 관리자(보직자) 정원, 제외직군·직렬의 명칭" 증빙

- 예시 : 직제 시행규칙, 조례, 공시(ALIO, 클린아이시스템), 기관 내부자료(내부결재 공문, 정보시스템 캡쳐, 총무·인사 부서로부터 받은 이메일 등 공식적인 인정이 가능한 자료) 등 본부·본청·본원·본사 정원이 기재된 공식자료
 (정원 필수 포함 직군·직렬 : 일반직, 사무직, 전산직, 회계직, 행정직, 연구직 등
 정원 제외 가능 직군·직렬 : (시설·미화·경비 등) 공무직, 상담직, 소방직 등 비사무직)

[참고사항]

[주요 불인정 사례]

- (**전문교육 지표**) 데이터기반행정 담당 실무자 누락 및 온라인 교육 이수

※ 2인 모두 이수 : 4점, 1인만 이수 및 2명 미이수 : 0점

※ 데이터기반행정 담당자 1명은 '데이터기반행정 담당 조직 및 인력' 지표에서 제출한 담당자 성명과 동일해야 함

※ 데이터기반행정 실무담당자가 기본소양 교육만 이수한 경우

- (**전문교육·실무자교육·관리자교육 지표**) 단순 사업관리를 위한 교육, 설명회, 컨퍼런스 등

※ (예시)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교육,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설명회, 기관 내부 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등

○ 「2-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노력 및 실적」 지표

지표 정의	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각 기관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 및 실적에 대해 정성적으로 평가		
배점	**8점** (①-5점, ②-3점)	**방식**	**정성** (평가시스템에 자료제출 필요)
담당자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 **김경숙 주무관(044-205-2475)**, NIA **김소영 수석(053-230-1939)**		

2-⑤-1.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5점)

기관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활용한 사례의 우수성 평가

[평가 방법]

[평가기준]

■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활용한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

- 기관에서 선정한 **대표사례 1건**을 통해 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사후관리 등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수준 평가

* '기초, 기타공공, 시도교육청'의 경우, 정책활용 사례가 없을 시 '정책활용 계획'으로 대체 가능

※ 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한 과제뿐 아니라 다수 기관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수행한 협업과제나 타 기관의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과제도 인정

[점수산정]

■ 기관의 데이터 분석·활용 대표사례의 우수성을 **5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

[제출자료] 평가시스템에 아래의 자료 제출 필요 **(첨부2-6 작성양식 참고)**

■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 보고서

■ 보고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공식 결재 및 보고 문서, 사진 등)

※ 모든 증빙을 한 파일로 묶어 PDF 형태로 1부 제출

[참고사항]

[주요 불인정 사례]

■ 실적기준일('23.10.1.~'24.8.31.) 내 실적이 아닐 경우

※ 공식 문서 내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어야 함

■ 보고서 작성 없이 증빙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2-⑤-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타 시책 노력(3점)

기관에서 데이터기반행정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기타 시책 노력 평가

[평가 방법]

[평가기준]

■ **문화조성 :**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문화조성 노력

- (예시) 공모전, 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 AI 회의록 등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 활용 등

* 유관·상위기관 등과 공동 개최도 가능하나, 공동 개최 시 각 기관담당자의 참석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실적인정

■ **성과 확산 및 홍보 :** 데이터 분석·활용 성과 확산을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인지도 제고 노력

- (예시) 설명회, 관계자 간담회, 보도자료 배포, 우수사례집 발간 등

■ **기타 :**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기타 노력

- (예시) 관련 특강·세미나 개최,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시스템 정비, 통계관리, 컨설팅 참여 등

[점수산정]

■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3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

[제출자료] 평가시스템에 아래의 자료 제출 필요 **(첨부2-7 작성양식 참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타 시책 추진 보고서

■ 보고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공식 결재 및 보고 문서, 사진 등)

※ 모든 증빙을 한 파일로 묶어 PDF 형태로 1부 제출

[참고사항]

[주요 불인정 사례]

■ 실적기준일('23.10.1.~'24.8.31.) 내 실적이 아닐 경우

※ 공식 문서 내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어야 함

■ 보고서 작성 없이 증빙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3. 공유 영역

< 평가목적 >

모든 기관이 보다 손쉽고 빠르게 필요한 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공유·활용 수준 및 노력을 평가

지표구성	배점							방식
	중앙	광역	기초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① 공유데이터 등록이행률	18	18	20	18	20	20	20	정량
② 공유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도	6	6	6	6	6	6	6	
③ 공유데이터 활용 실적	6	6	6	6	6	6	6	
④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	10	10	12	10	12	12	12	

○ 「3-① 공유데이터 등록이행률」 지표

지표 정의	공동활용데이터 연차별('23~'25) 등록계획에 따라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에 공유데이터를 등록 이행한 정도를 평가		
배점	**18점** (※ 기초, 지방공기업, 기타공공, 시도교육청 20점)	**방식**	**정량**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에서 집계)
담당자	행안부 공공데이터관리과 **이재성 주무관(044-205-2484)**, NIA **김기훈 선임(053-230-1532)**		

[평가 방법]

[평가기준]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계획에 따른 올해('24) 등록 대상으로 확정된 데이터의 등록이행률과 전년도('23) 등록 미이행 데이터의 등록이행률을 평가*

* 올해('24) 등록대상 확정 데이터 및 전년도('23) 미이행 데이터는 '등록관리시스템 후보군 관리' 메뉴에서 확인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관리과-1819(2023.6.30.) 참고)

[평가산식]

- **연차별('23~'25) 등록계획 수립 기관**

$$\left\{\left(\frac{\text{'24년 등록대상 중 등록 건수}}{\text{'24년 등록대상 건수}}\right)\times 14\right\}+\left\{\left(\frac{\text{'23년 등록건수}+\text{'23년 등록 대상 중 '24년 등록 건수}}{\text{'23년 등록 대상 건수}}\right)\times 4\right\}$$

- **연차별('23~'25) 등록계획 미수립 기관**

$$\left\{\frac{\text{'24년 등록 건수}}{(15+\text{'23년 미등록 건수})}\times 18\right\}$$

※ 기초,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의 경우, 20점 배점으로 환산 (위의 산식에 따른 결과값에 1.111을 곱한 후,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제출자료]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집계하므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참고사항]

■ 8월 31일까지 데이터 업로드 완료, 9월 30일까지 행안부 검토결과에 따른 보완을 완료하여야 함
※ 9월 중 신규로 등록 요청한 데이터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공유데이터 등록 메뉴
- (연차별 등록대상 데이터)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sharedata.insight.go.kr) > 후보군 관리 > 후보군 등록이행관리
- (자율등록 데이터)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sharedata.insight.go.kr) > 데이터 등록
※ '총괄담당자, 업무담당자' 권한인 사용자만 소속기관의 데이터 등록 가능

[유의사항]

1. **'24년** 등록대상으로 **확정된 데이터 건수가 15건 미만**인 기관
- 자율등록 데이터와 합산하여 15건 이상 등록할 경우 '24년 이행률 만점 부여, 올해 등록대상 확정건수를 15건으로 봄
※ 단, '24년 등록대상 데이터를 모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자율등록 데이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예시) '24년도 등록대상으로 **확정된 데이터 건수가 10건**인 기관(확정 15건 미만 기관)

⇒ '24년도 등록대상 데이터 10건, 자율등록 데이터 5건 등록 완료

☞ {(10+5)÷15}×14=14점

⇒ '24년도 등록대상 데이터 9건, 자율등록 데이터 6건 등록 완료

☞ {(9+5)÷15)×14=13점

2. **'24년** 등록대상으로 **확정된 데이터 건수가 100건 이상**인 기관
- 등록대상의 70% 이상 등록 시 '24년도 이행률 만점 부여

예시) '24년도 등록대상으로 **확정된 데이터 건수가 100건**인 기관

⇒ '24년도 등록대상 데이터 80건 등록 완료(70% 이상 등록)

☞ (80÷100)×14 = **11.2점(X)** ⇨ **14점(O)** (목표대비 70% 이상 등록으로 만점 처리)

⇒ '24년도 등록대상 데이터 60건 등록 완료

☞ (60÷100)×14=8.4점

3. **'23년** 등록대상으로 **확정된 데이터 건수가 100건 이상**인 기관
- 기등록 데이터 포함, 등록대상의 70% 이상 등록 시 전년도 이행률 만점 부여

예시) '23년도 등록대상으로 **확정된 데이터 건수가 100건**인 기관

⇒ '23년도 등록대상 데이터 중 기등록 65건, '24년 10건 등록 완료

☞ {(65+10)÷100}×4 = **3점(X)** ⇨ **4점(O)** (목표대비 70% 이상 등록으로 만점 처리)

⇒ '23년도 등록대상 데이터 중 기등록 50건, '24년 10건 등록 완료

☞ {(50+10)÷100}×4 = **2.4점**

4. **'23년도** 최소 등록기준인 **5건 미만으로 데이터를 등록**한 기관

- 전년도 최소 기준(5건)에서 등록한 데이터 건수를 차감하여 미이행 데이터 건수 산정

※ '24년 신규 설립 및 공공기관 지정 기관의 전년도 미이행 데이터는 없음으로 간주

예시) '23년도 등록대상으로 **확정된 데이터 건수가 3건**인 기관**(최소 5건 등록 기준)**

⇒ '23년도 등록대상 데이터 중 기등록 2건, '24년 2건 등록 완료

☞ {(2+2)÷5}×4=3.2점

5. **등록유형*이 다른 데이터**는 다른 유형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연차별 등록대상 데이터, 자율등록 데이터 등

6. 연차별('23~'25) 등록계획 미수립 기관

예시) 연차별 등록계획 미수립 기관

⇒ '24년에 등록계획 미수립기관이 자율등록 9건 등록 완료. 단, 전년도 등록한 데이터가 2건 (목표 5건)

☞ {9÷(15+3*('23년 미이행건')*)}×18=9점

○ 「3-② 공유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도」 지표

지표 정의	모든 기관이 보다 손쉽고 빠르게 필요한 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의 보유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 및 실행방안 등을 포함한 로드맵 수립 정도를 평가		
배점	**6점**	**방식**	**정량** ('행정안전부 보유자료'로 평가)
담당자	행안부 공공데이터관리과 **박지연 사무관(044-205-2486)**, NIA **김아름 선임(053-230-1592)**		

[평가 방법]

[평가배점]

평가기준	점수
메타데이터를 기준으로 예외사항을 제외한 **70% 이상의 데이터를 포함**하여 기관의 **공유데이터 구축·관리 로드맵 수립**	6점
메타데이터를 기준으로 예외사항을 제외한 **40% 이상의 데이터를 포함**하여 기관의 **공유데이터 구축·관리 로드맵 수립**	4점
메타데이터를 기준으로 예외사항을 제외한 **40% 미만의 데이터를 포함**하여 기관의 **공유데이터 구축·관리 로드맵 수립**	2점
기관의 **공유데이터 구축·관리 로드맵 미수립**	0점

[제출자료] 기관에서 수립한 공유데이터 구축·관리 로드맵을 공문으로 제출

[유의사항]

1.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공유데이터 구축·확산을 위한 연차별('25~'26년) 목표, 보유 DB 및 테이블 수 등을 포함하여 로드맵 수립 내용 작성
 - 2024년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작성양식(엑셀)의 공유데이터 파트*를 작성·보완한 자료를 4.5.(금)까지 공문으로 제출**
 * 작성양식(엑셀)의 작성대상 시트 : 11. (계획) 보유데이터 전면 공유 확대, 12. (계획) 공유데이터 구축 기반 조성, 13. (계획) 공유데이터 활용확대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작성양식(엑셀)을 제출한 대부분의 기관이 작성대상 기관, 확대 목표 등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가 많아 반드시 재확인 후 보완 제출 필요
 - 정보시스템 수, 보유 DB 수, 테이블 수, 기 공유데이터 수, 비밀 등 공유불가 데이터 수 등 내용을 누락없이 기재
 - 예외사항*을 제외한 기관 보유데이터**의 70% 이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목표 수립
 * **(예외사항)** 법령에서 비밀로 규정하거나,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되거나, 다른 법령에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 **(기관 보유 데이터)**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보유 DB의 테이블 수로, 미등록된 DB는 등록 후 보유DB의 테이블 수를 산정할 것(미등록 보유DB에 대한 메타데이터 등록 요청('24.2.1. 공문 시행) 공문을 참조하여 현행화
2. 기관의 공유데이터 구축·관리 로드맵을 미수립한 기관(점수 0점)의 경우라도 범정부 데이터 공유·활용의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메타데이터를 기준으로 예외사항을 제외한 20%의 데이터를 연차별('25~'26년)로 목표치를 균등하게 설정할 예정임
 * **(예시)** A기관이 예외사항을 제외한 20%의 데이터 수(보유DB의 테이블 수)가 50개라면, '25년 목표 25개, '26년 목표 25개로 균등하게 설정

[참고사항]

■ 4.5.(금)까지 공문으로 제출된 2024년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작성양식(엑셀)의 내용을 토대로 기관별 공유데이터 구축·관리 로드맵을 취합하고 범부처 공유데이터 구축·관리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으로,

■ 이를 위해 4월 중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공유데이터 구축·관리 로드맵 수립 방향 및 보완 기준 제시 등)를 개최하고 이에 따라 보완된 최종자료를 공문으로 제출**(공공데이터관리과) 필요

* 설명회 개최 일정 및 보완된 최종자료 제출 기한은 4월 중 공문으로 안내할 예정

** 중앙행정기관 :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의 자료를 취합하여 작성
지방자치단체(시도) : 시군구, 소속·직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의 자료를 취합하여 작성

○ 「3-③ 공유데이터 활용 실적」 지표

지표 정의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의 활용 실적을 평가		
배점	6점	방식	정량('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에서 집계)
담당자	행안부 공공데이터관리과 **이재성 주무관(044-205-2484)**, NIA **김기훈 선임(053-230-1532)**		

[평가 방법]

[평가배점]

평가기준	배점
등록건수 3건 이상	6점
등록건수 2건	4점
등록건수 1건	2점
등록건수 0건	0점

[제출자료]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집계하므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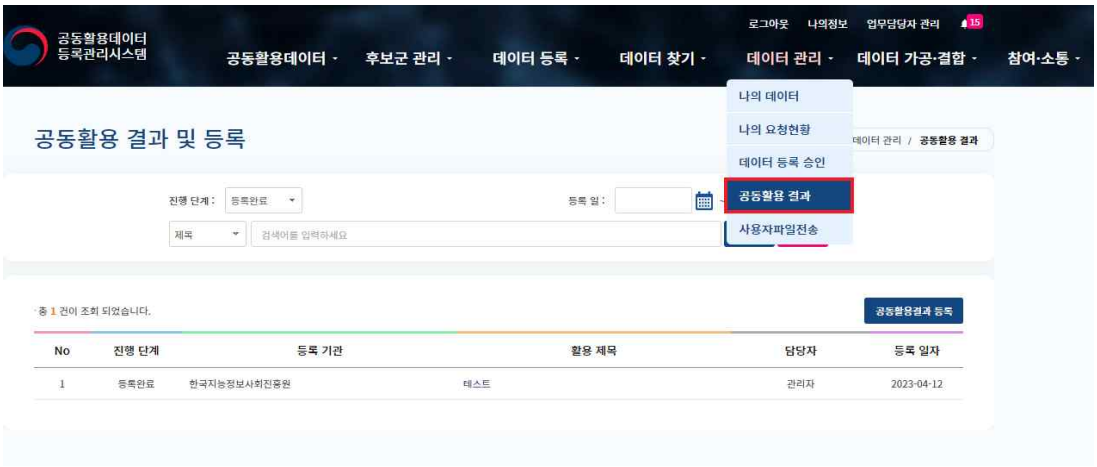
[유의사항]

1.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활용한 실적에 한함
 ※ 활용실적 등록은 승인 사항이며, 행정안전부 검토결과에 따름
2. 실적인정기간('23.10.1~'24.8.31.)동안 "공유데이터, 활용기간, 활용내용*, 활용계획"이 포함된 활용결과 보고서를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고, 9.30.까지 행안부 검토결과에 따른 보완을 완료한 건만 실적으로 인정함(9월 중 신규로 등록한 건은 불인정)
 * 공유데이터를 가공, 결합, 분석 내용 및 업무에 활용한 전반적인 추진내용

[참고사항]

▪ 공유데이터 활용 실적 등록 메뉴

-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sharedata.insight.go.kr) > 데이터 관리 > 공동활용 결과



○ 「3-④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 지표

지표 정의	기관별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를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현행화한 실적을 평가 *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하는 자료 ** 기관메타관리시스템 및 중앙메타관리시스템		
배점	**10점** (※ 기초, 지방공기업, 기타공공, 시도교육청 12점)	**방식**	**정량** ('메타관리시스템'에서 집계)
담당자	행안부 공공데이터관리과 **허준 주무관(044-205-2487)**, NIA **이성옥 선임(053-230-1536)**		

[평가 방법]

[평가기준]

■ 평가산식

$$\frac{\text{상반기 메타데이터 등록·관리(현행화)율 점수} + \text{하반기 메타데이터등록·관리(현행화)율점수}}{2}$$

※ 메타데이터 등록·관리(현행화)율 = $\frac{\text{현행화된 테이블 수}(B)}{\text{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테이블 수}(A)}$

- (A) 메타관리시스템 등록 대상 : **정보자원관리시스템(구, 범정부 EA포털)에 '운영 중'**으로 등록된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DB 및 테이블 전체**
 - ※ 네트워크·백업·보안 등 시스템SW 및 패키지SW는 해당 '정보시스템' 관련 정보와 제외유형을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되, 평가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음
- (B) 기관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테이블을 현행화하여 중앙메타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수
 - ※ 기관메타관리시스템에서 테이블 현행화가 완료되었으나, 기관에서 중앙메타관리시스템으로 최종 전송처리 하지 않은 테이블은 현행화된 테이블 수(B)로 불인정

■ 평가배점

평가기준	점 수	
	A기관	B기관
현행화율이 90% 이상	10점	12점
현행화율이 80% 이상	8점	9.6점
현행화율이 70% 이상	6점	7.2점
현행화율이 60% 이상	4점	4.8점
현행화율이 40% 이상	2점	2.4점
현행화율이 40% 미만	0점	0점

※ **A기관** :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기관, **B기관** : 기초,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제출자료] 메타관리시스템을 통해 집계하므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유의사항]

① 공통표준시스템(표준배포)* 주관기관의 경우, 기관이 보유한 다른 정보시스템 및 DB와 동일하게 공통표준시스템(표준배포)도 등록대상 테이블 수(A)에 포함되어 평가되므로 메타데이터를 등록·현행화하여야 함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새올행정시스템 등과 같이 동일·유사 행정업무를 위해 한 기관에서 개발하여 다수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배포·보급한 시스템이며, 이를 설치하여 활용하는 기관의 경우 평가대상 정보시스템 및 DB에 미포함

② 메타데이터 등록·관리(현행화)율은 연 2회(5월, 9월) 평가하여 점수를 산출하고, 각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치를 기관의 평가점수로 적용함

- 5월에 시행되는 평가에서는 4월까지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테이블을 평가대상에 포함하며, 5~8월동안 등록된 테이블은 9월 평가대상에 포함

③ 최종 평가일(9월) 기준, 메타관리시스템에 미등록한 정보시스템 및 DB정보가 있는 경우, 기관의 등록·관리(현행화)율 점수에서 감점 적용

- '등록 대상 정보시스템(DB) 수*(B) 대비 미등록된 정보시스템(DB) 수(A)'의 비율에 대한 아래 기준에 따라 기관의 평가점수에서 감점 적용**

* 정보자원관리시스템(구, 범정부 EA포털),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 예정(행안부)

** 기관의 평가점수는 '0점'이 하한선으로 '0점' 미만은 없음

측정기준	기준	점수
미등록 정보시스템(DB) 비율 = 미등록 정보시스템(DB) 수 / 등록 대상 정보시스템(DB) 수	80% 이상	-5점
	60% 이상	-4점
	40% 이상	-3점
	20% 이상	-2점
	10% 이상	-1점

< 산출예시① : 미등록 정보시스템이 없는 기관 >

정보시스템	DB 수	상반기(5월)		하반기(9월)		기관 평가점수
		등록대상 테이블 수	현행화 테이블 수	등록대상 테이블 수	현행화 테이블 수	
A	1	10	10	10	8	(6+10) ÷ 2 = **8점** ☞ **감점 적용사항 없으므로 최종 8점**
B	2	40	20	40	40	
C	1	20	15	20	20	
D	1	10	8	10	9	
E	1	20	18	20	15	
등록관리(현행화)율 점수		71÷100=71% ⇒ **6점**		92÷100=92% ⇒ **10점**		

< 산출예시② : 미등록 정보시스템이 있는 기관 >

정보시스템	DB 수	상반기(5월)		하반기(9월)		기관 평가점수
		등록대상 테이블 수	현행화 테이블 수	등록대상 테이블 수	현행화 테이블 수	
가	1	16	15	20	15	(8+10) / 2 = 9**점** ☞ **2점 감점하여 최종 7점**
나	1	20	15	18	18	
다	2	10	8	10	10	
라	2	25	22	25	25	
마	1	10	9	11	10	
바	2	미등록				
등록관리(현행화)율 점수		69÷81=85.1% ⇒ **8점**		78÷84=92.8% ⇒ **10점**		
미등록 정보시스템(DB) 비율				2÷9=22.2% ⇒ **-2점**		

[참고사항]

■ 메타데이터 등록·관리(현행화)율 확인 방법 : 기관메타시스템 > 정보시스템관리 > DB현황

■ 개별 메타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연계되어 전송된 경우만 현행화율 인정

※ 단, 등록 테이블 수에 대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음

4. 품질 영역

< 평가목적 >

공공기관이 생성·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진단

지표구성	배 점							방식
	중앙	광역	기초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①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18**	**18**	**15**	**18**	**18**	**15**	**15**	정량
①-1 관리절차 준수	1	1	1	1	1	1	1	
①-2 예방적 품질관리	5	5	5	5	5	5	5	
①-3 데이터 표준관리	6	6	5	6	6	5	5	
①-4 데이터 구조관리	3	3	2	3	3	2	2	
①-5 데이터 연계관리	3	3	2	3	3	2	2	
② 데이터 값 관리	**18**	**18**	**15**	**18**	**18**	**15**	**15**	
②-1 데이터 품질진단	9	9	8	9	9	8	8	
②-2 데이터 오류율	9	9	7	9	9	7	7	
③ 진단결과 조치	**9**	**9**	**9**	**9**	**9**	**9**	**9**	

○ 「4-①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지표

지표 정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기관의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활동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품질관리 활동을 평가		
배점	**18점** (※ 기초, 기타공공, 시도교육청 15점)	**방식**	**정량** (세부지표별 [평가 방법] 내 [제출자료] 참조)
담당자	4-①-1, 5 : 행안부 공공데이터관리과 **홍종윤 주무관(044-205-2491)**, NIA **김재성 책임(053-230-1539)** 4-①-2 : 행안부 공공데이터관리과 **김혜윤 주무관(044-205-2490)**, NIA **류도 수석(053-230-1535)** 4-①-3, 4 : 행안부 공공데이터관리과 **장진욱 주무관(044-205-2492)**, NIA **이수민 주임(053-230-1540)**		

4-①-1. 관리절차 준수(1점)

기관 공공데이터의 체계적인 품질관리 계획 이행을 위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DB정보의 현행화 및 평가대상 DB 선정을 위한 일정 준수 여부를 평가

[평가 방법]

[평가기준]

번호	기 준	배점
1	**보유DB 현행화 및 평가대상 DB 선정** - 기관 보유DB 정보(메타관리시스템으로부터 수신)를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서 확인·검토하고 평가대상 DB 선정(보유 DB의 55%를 **5.31.까지 완료**해야 함 ※ '24년 메타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수신된 정보와 '23년 보유DB 조사 정보를 비교*하여, 누락된 DB정보와 그 이후 생성·변경된 DB의 정보가 있으면 보유DB 현행화를 위해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수정·삭제해야 함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서 확인 가능(4월말)	1점

[제출자료]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서 자동 집계되므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4-①-2. 예방적 품질관리(5점)

정보시스템(DB) 구축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수행 여부 및 진단결과 반영 여부를 단계별로 평가

[평가 방법]

[평가기준]

번호	기 준	배점	
		A기관	B기관
1	**예방적 품질관리 자체진단 수행**	1점	2점
2	**사업발주 단계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결과 반영**	1.5점	2점
3	**사업완료 단계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결과 반영**	2.5점	1점

※ **A기관** :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B기관** : 기초,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점수산정]

■ 기준1 : 예방적 품질관리 자체진단 수행

- '23.10.21.~'24.9.30. 기간 중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협의 자체검토 결과(DB 분야)를 확인하여 **예방적 품질관리 자체진단 여부 판단**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서 확인되는 '사전협의 신청일'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선정하되, 사전협의 신청일이 '23.10.21. 이전인 사업 중 '23년 평가 미실시 사업은 대상에 포함됨

- 평가산식 :

$$\text{점수} = \frac{\text{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수행 사업 수}^{2)}}{\text{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대상 사업 수}^{1)}} \times \text{배점}$$

1) '23.10.21.~'24.9.30. 기간동안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신청**한 사업 중 **DB구축을 포함**하는 사업 수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서 확인되는 '사전협의 신청일'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선정하되, 사전협의 신청일이 '23.10.21. 이전인 사업 중 '23년 평가 미실시 사업은 대상에 포함됨)

2)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대상 사업 중 DB분야 진단항목*에 대한 자체검토·진단내역을 포함하여 **사전협의 자체검토 결과**를 작성한 사업 수(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을 자체적으로 수행한 사업 수)

 * DB분야 진단항목 세부사항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23.4월 배포) 3.2.1.3 정보화사업 유형 및 금액별 진단기준 참고

■ 기준2 : 사업발주 단계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결과 반영

-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23.10.1.~'24.8.31. 기간 중 통보*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발주를 위해 사업계획(제안요청서) 요구사항 확정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결과를 반영했는지 여부 평가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서 확인되는 '검토결과 공문시행일'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선정하되, '보완후협의' 사업은 '반영계획 점검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의견 반영 결과(제안요청서)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하여야 함('24.9.30.까지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반영으로 판단)

- 평가산식 :

· 점수 = (사업별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결과 반영비율[2]의 합계 /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검토결과 통보 사업 수[1]) × 배점

1) 사전협의 신청 후 '23.10.1.~'24.8.31. 기간동안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사업* 수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서 확인되는 '검토결과 공문시행일' 기준)
*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사업의 경우, '24.8.31.까지 재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

2) 사업별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결과 반영비율 = 검토대상 진단항목 중 최종 반영된 항목 수 / (검토대상 진단항목*) - (해당없음 항목 수**)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23.4월 배포) 3.2.1.3 정보화사업 유형 및 금액별 진단기준의 항목 수
** 사전협의 결과 중 사업내용과 맞지 않아 반영 불가능한 항목이 있는 경우,
반영 불가 사유와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증빙자료를 검토 후 '해당없음 항목'으로 인정

■ 기준3 : 사업완료 단계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결과 반영

- '21.3.12. 이후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신청하여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을 실시한 사업 중 '23.10.1.~'24.8.31. 기간동안 완료된 사업(이하 '이행점검 대상 사업')을 대상으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이 이행되었는지 여부 평가

※ 이행점검 대상 사업은 사전협의 이행결과(사업결과 산출물)를 '24.9.30.까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하여야만 이행된 것으로 판단(9.30.까지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으로 판단)

- 평가산식 :

· 점수 = (사업별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결과 이행비율[2]의 합계 / 예방적 품질관리 이행점검 대상 사업 수[1]) × 배점

1) '21.3.12. 이후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신청하여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을 실시한 사업 중
'23.10.1.~'24.8.31. 기간동안 완료된 사업

2) 사업별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결과 이행비율 = 완료단계에서 이행된 항목 수 / 검토대상 진단항목*- 해당없음 항목 수**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23.4월 배포) 3.2.1.3 정보화사업 유형 및 금액별 진단기준의 항목 수
** 사전협의 결과 중 사업내용과 맞지 않아 반영 불가능한 항목이 있는 경우
반영 불가 사유와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증빙자료를 검토 후 '해당없음 항목'으로 인정

[제출자료]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 **기준1 :** 사전협의 신청 시 제출한 자체검토결과서로 평가하므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 **기준2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된 사전협의 검토의견 반영결과(제안요청서)로 평가하므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 **기준3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된 사전협의 이행결과(사업결과 산출물)로 평가하므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 필요시 추가 자료 요구가능(사업완료 보고 공문만 등록하여 세부 이행결과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4-①-3. 데이터 표준관리(6점)

평가대상 DB에 대하여 상위표준을 준용한 기관·DB표준을 정의하여 대상 DB에 적용하고, 공통표준용어 기준으로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를 관리하여 연계·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평가

[평가 방법]

[평가기준]

번호	기 준	배점	
		A기관	B기관
1	**상위표준을 준용한 데이터 표준 정의**	2.5점	2.5점
2	**데이터 표준 적용률**	2.5점	2.5점
3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 관리**	0.5점	-
4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 연계·활용**	0.5점	-

※ **A기관** :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B기관** : 기초,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점수산정]

■ 기준1 : 상위표준을 준용한 데이터 표준 정의

- 공통표준을 준용하여 기관표준을 정의하고, 기관표준을 준용하여 진단·평가 대상 DB의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정의하였는지 여부 평가
- 기관표준 및 DB표준('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의 항목*을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 항목 : **(표준용어)** 표준용어명, 영문약어명, 표준도메인명, **(표준단어)** 표준단어명, 단어 영문약어명, 형식단어 여부, **(표준도메인)** 도메인명, 데이터타입, 데이터길이, **(표준코드)** 코드명, 코드값, 코드값 의미

※ '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는 관리항목에 반드시 제정(생성)일자를 포함해야 함

※ '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정의 시 기관표준 및 공통표준을 준용하여야 하며,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기관표준 및 공통표준을 준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표준코드' 정의 시 기관코드 및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함

- 평가 산식 :

· 점수 = $\frac{\text{진단·평가 대상 DB의 지표점수 합계}^{3)}}{\text{진단·평가 대상 DB 수}^{1)}} \times A^{2)}$

1) 기관에서 선정 기준(보유 DB의 55%)에 따라 선정한 '24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DB 수
2) 공통표준을 준용하여 기관표준을 정의한 경우 A=1, 정의하였으나 공통표준 미준용 A=0.9, 미정의 A=0.8
3) DB별 점수 산정 기준

① 표준용어 점수 = $\frac{\text{충족되는 진단·평가기준 항목 수}}{\text{해당되는 진단·평가기준 전체 항목 수}} \times 0.85$	①, ②, ③, ④ 점수의 합
② 표준단어 점수 = $\frac{\text{충족되는 진단·평가기준 항목 수}}{\text{해당되는 진단·평가기준 전체 항목 수}} \times 0.4$	
③ 표준도메인 점수 = $\frac{\text{충족되는 진단·평가기준 항목 수}}{\text{해당되는 진단·평가기준 전체 항목 수}} \times 0.85$	
④ 표준코드 점수 = $\frac{\text{충족되는 진단·평가기준 항목 수}}{\text{해당되는 진단·평가기준 전체 항목 수}} \times 0.4$	

① '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점수 산정기준

기관표준 구분	공통표준 구분	진단·평가기준
기관표준 제·개정 이후 DB 구축	공통표준 제정 이후 DB 구축	1. 데이터베이스 표준 정의
		2. 기관표준 준용 여부
		3. 공통표준 준용 여부
	공통표준 제정 이전 DB 구축	1. 데이터베이스 표준 정의
		2. 기관표준 준용 여부
기관표준 제·개정 이전 DB 구축	공통표준 제정 이후 DB 구축	1. 데이터베이스 표준 정의
		2. 공통표준 준용 여부
	공통표준 제정 이전 DB 구축	1. 데이터베이스 표준 정의

② '표준코드' 점수 산정기준

기관표준 구분	진단·평가기준
기관표준 제·개정 이후 DB 구축	1. 데이터베이스 표준코드 정의
	2. 기관표준코드 포함 정의
기관표준 제·개정 이전 DB 구축	1. 데이터베이스 표준코드 정의

■ 기준2 : 데이터 표준 적용률

- 진단·평가 대상 DB의 컬럼에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을 적용하였는지 여부를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또는 메타관리시스템의 컬럼정보와 비교하여 평가

※ DB표준 적용여부 평가대상 : 데이터베이스 표준용어의 영문약어명과 표준도메인의 데이터타입, 데이터길이

- 평가 산식 :

· 점수 = $\frac{\textbf{진단·평가 대상 DB의 지표점수 합계}^{2)}}{\textbf{진단·평가 대상 DB 수}^{1)}}$

1) 기관에서 선정 기준(보유 DB의 55%)에 따라 선정한 '24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DB 수
2) DB별 점수 산정 기준

· 데이터 표준 적용률(%) = $\frac{\text{데이터 표준이 적용된 컬럼 수}^{2)}}{\text{전체 컬럼 수}^{1)}} \times 100$

1) 전체 컬럼 수 : 진단·평가대상 DB의 전체 컬럼 수
2) 진단·평가대상 DB의 컬럼 중 DB표준**(영문약어명, 데이터타입, 데이터길이)**이 적용된 컬럼 수

진단·평가기준	점수
표준 적용률 90% 이상	2.5점
표준 적용률 80% 이상	2점
표준 적용률 70% 이상	1점
표준 적용률 70% 미만	0.5점
미수행	0점

■ 기준3 :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 관리

- 비표준 데이터 매핑 대상을 식별하고, 공통표준용어를 적용하지 않은 DB 표준용어는 공통표준용어의 표준용어명 또는 영문약어명을 매핑하여 관리하는지 여부 평가

- 의미가 같은 용어에 대하여 DB 표준용어에서 공통표준용어와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경우 **비표준 데이터**로 분류하고, **'표준용어명', '영문약어명', '데이터타입', '데이터길이'**를 포함하여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를 **관리**하여야 함(시스템에서 비표준 매핑 지원 예정)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서 비표준 매핑 지원 예정
※ 비표준 데이터 매핑대상인 DB 표준용어 전체가 공통표준용어와 매핑되어야 함
※ 비표준 데이터 매핑대상은 공통표준용어 제정 이전에 구축한 DB가 대상이 됨 (다만, 공통표준용어 제정 이후에 구축한 DB라 할지라도 공통표준용어를 준용하지 않은 경우는 비표준 매핑정보를 관리하고 제출해야 함)
※ '예시) DB 표준용어 '등록일(REG_DT)'과 공통표준용어 '등록일자(REG_YMD)'를 매핑 관리

DB명	표준용어명	영문약어명	데이터타입	데이터 길이	비표준 데이터 매핑 대상 여부	매핑 표준용어명*
제공기관DB	등록일	REG_DT	VARCHAR2	20	Y	**등록일자**

* 비표준 데이터와 매핑되는 공통표준용어의 '표준용어명' 또는 '영문약어명'을 작성하여 관리

- 단, 신규 구축 및 지속적인 표준화 활동을 통해 DB 표준용어 전체가 공통표준용어를 준용하고 있어 비표준 연계·활용 대상이 없을 경우 0.5점 부여(표준화 활동 증빙자료 별도 요청 가능)

■ **기준4 :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 연계·활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8조 제5항)」에 따라 진단·평가 대상 DB에 대해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연계·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평가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연계정보명, 연계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데이터 길이), 연계 항목 출처(DB명, 테이블명, 컬럼명)'를 포함하여 데이터 연계·활용 내역을 관리해야 함

※ 연계 항목의 '항목명'은 공통표준용어의 영문약어명을 준용하여야 함

연계 정보			연계 항목				연계 항목 출처		
연계정보 구분	연계 정보명	연계 주기	항목명[1]	설명	데이터 타입	데이터 길이	DB명	테이블명	컬럼명[2]
송신	등록정보	월	REG_YMD		CHAR	8	A	ABC	REG_DT

[1] 공통표준용어가 적용되어 외부에 연계되는 항목명(영문약어명)을 작성

[2] DB에 저장되어 있는 실제 컬럼명(영문약어명)

- 단, 신규 구축 및 지속적인 표준화 활동을 통해 DB 표준용어 전체가 공통표준용어를 준용하고 있어 비표준 연계·활용 대상이 없을 경우 0.5점 부여(표준화 활동 증빙자료 별도 요청 가능)

※ '④-①-**5. 데이터 연계관리(**기준1) 연계데이터 관리 정보 정의' 지표에서 '해당없음'(N/A)으로 처리된 경우 해당 지표도 '해당없음'(N/A) 처리됨

[제출자료]

■ **기준1**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등록된 기관표준 및 DB표준(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으로 평가되므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 **기준2**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서 자동 집계되므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 **기준3** :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를 **평가시스템**에 **제출 필요**

■ **기준4** :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 기준 연계·활용 실적 문서(연계내역)을 **평가시스템**에 **제출 필요**

4-①-4. 데이터 구조관리(3점)

진단·평가대상 DB의 '데이터베이스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를 구성하는 항목을 실제 DB 구조에 맞게 현행화하여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지 여부 평가

[평가 방법]

[평가기준]

번호	기 준	배점	
		A기관	B기관
1	**데이터 구조 정의**	1.5점	1점
2	**데이터 구조 현행화**	1.5점	1점

※ **A기관** :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B기관** : 기초,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점수산정]

■ 평가 산식 :

· 점수 = $\frac{\text{진단·평가 대상 DB의 지표점수 합계}^{2)}}{\text{진단·평가 대상 DB 수}^{1)}}$

1) 기관에서 선정 기준(보유 DB의 55%)에 따라 선정한 '24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DB 수
2) DB별 점수 산정 기준

■ 기준1 : 데이터 구조 정의

- DB별 '데이터베이스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을 구성하는 표준관리항목을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등록하였는지 여부 평가

※ 평가항목 : **(데이터베이스정의서)** 기관명, 한글 DB명 또는 영문 DB명, DBMS 정보, **(테이블정의서)** 영문 테이블명, 한글 테이블명, **(컬럼정의서)** 영문 테이블명, 영문 컬럼명, 한글 컬럼명, 데이터 타입, 데이터 길이,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영문 DB명, 설명

① 데이터베이스정의서 평가기준

평가기준	점수	
	A기관	B기관
평가항목 포함 등록	0.1점	0.1점
미등록	0점	0점

② 테이블정의서 평가기준

평가기준	점수	
	A기관	B기관
평가항목 포함 등록	0.5점	0.3점
미등록	0점	0점

③ 컬럼정의서 평가기준

평가기준	점수	
	A기관	B기관
평가항목 포함 등록	0.8점	0.5점
미등록	0점	0점

④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평가기준

평가기준	점수	
	A기관	B기관
평가항목 포함 등록	0.1점	0.1점
미등록	0점	0점

①, ②, ③, ④ 점수의 합

■ **기준2) 데이터 구조 현행화**

- 데이터 구조 산출물('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을 실제 DB의 구조에 맞게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평가

- 평가 산식

① 테이블 현행화율(%) = $\frac{\text{물리DB와 테이블정의서 테이블 정보 일치 개수}}{\text{물리DB 내 테이블 전체 개수}} \times 100$

② 테이블정의서 현행화율(%) = $\frac{\text{물리DB와 테이블정의서 테이블 정보 일치 개수}}{\text{전체 테이블정의서 내 테이블 개수}} \times 100$

③ 컬럼 현행화율(%) = $\frac{\text{물리DB와 컬럼 정의서 컬럼 정보 일치 개수}}{\text{물리DB 내 컬럼 전체 개수}} \times 100$

④ 컬럼정의서 현행화율(%) = $\frac{\text{물리DB와 컬럼 정의서 컬럼 정보 일치 개수}}{\text{전체 컬럼정의서 내 컬럼 개수}} \times 100$

①, ②, ③, ④ 중 낮은 비율 적용

평가기준	점수	
	A기관	B기관
현행화율 90% 이상	1.5점	1점
현행화율 80% 이상	1점	0.7점
현행화율 70% 이상	0.5점	0.4점
미수행	0점	0점

[제출자료]

■ **기준1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등록된 항목을 평가하므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 **기준2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서 현행화율을 자동 집계하므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 기존의 방식처럼 산출물('데이터베이스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을 평가시스템에 제출하는 경우,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는 최초 산출물과 최신 산출물을 평가시스템에 모두 제출해야 함

4-①-5. 데이터 연계관리(3점)

내·외부기관의 정보시스템(DB)과 연계되어 송수신하는 데이터의 목록 정의 및 송·수신 내역 관리 여부 평가

[평가 방법]

[평가기준]

번호	기 준	배점	
		A기관	B기관
1	**연계데이터 관리 정보 정의**	1.5점	1점
2	**연계데이터 송·수신 내역 관리**	1.5점	1점

※ **A기관** :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B기관** : 기초,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점수산정]

■ 평가 산식 :

· 점수 = $\frac{\text{진단·평가 대상 DB의 지표점수 합계}^{2)}}{\text{진단·평가 대상 DB 수}^{1)}}$

1) 기관에서 선정 기준(보유 DB의 55%)에 따라 선정한 '24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DB 수
2) DB별 점수 산정 기준

■ 기준1 : 연계데이터 관리 정보 정의

- 내·외부 기관(DB) 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의 목록을 정의하는지 여부 평가

※ 필수항목(12종)인 "연계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데이터 길이), 항목 출처(DB명, 테이블명,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을 정의해야 함

진단·평가기준	점수	
	A기관	B기관
모든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정의	1.5점	1점
일부 필수항목만 포함하여 정의	1점	0.7점
미정의	0점	0점

- 별도의 정의서 형태가 아닌 연계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리되는 경우도 인정함
 · 연계 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 캡쳐 화면(연계데이터의 정합성 점검 및 모니터링 화면)도 인정 (단, 캡쳐 화면에 12개 필수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캡쳐 화면에 부족한 항목이 있는 경우, 부족한 정보를 관리하는 별도의 자료가 제출되어야 함)
- 연계데이터의 인정 범위 : 내부(기관 내 시스템 간) 및 외부(기관 간) 연계 대상
- 연계 형태가 API인 경우에도 12개 필수항목을 정의해야 함
- 연계데이터가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논리적** 시스템 구성도(인터넷으로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의 개념도로 RFP, 사업계획서 등에 기술되어 있는 구성도)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단순한 **물리적** 시스템 구성도(서버, H/W 구성도, S/W구성도, N/W구성도)를 제출하여 내·외부 정보시스템(DB)와의 연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준2 : 연계데이터 송·수신 내역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 점검 내역**(점검시점, 연계건수, 검증내역 등) 및 **오류발생 시 조치 내역(**오류발생 내역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관리 여부 평가

※ 연계데이터 오류 발생이 없는 경우, 연계 데이터 현황 점검 내역만 포함되어도 만점 획득

※ '기준1 연계데이터 관리 정보 정의' 지표에서 '해당없음'(N/A)으로 처리된 경우 해당 지표도 '해당없음'(N/A) 처리됨

진단·평가기준	점수	
	A기관	B기관
현황 점검 및 오류 조치 모두 수행	1.5점	1점
현황 점검, 오류 조치 중 하나만 수행	0.75점	0.5점
미수행	0점	0점

[제출자료] 평가시스템에 아래의 자료 제출 필요

■ **기준1 :**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또는 자료(연계 솔루션 캡쳐 화면 등)

■ **기준2 :** 연계데이터 현황 점검 및 오류 조치 내역

○ 「④-② 데이터 값 관리」 지표

지표 정의	각 기관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DB의 품질 제고를 위해 수행하는 품질진단기준 설정 및 오류 보완조치 등 데이터 값의 품질개선 활동을 평가		
배점	**18점** (※ 기초, 기타공공, 시도교육청 15점)	**방식**	**정량** (평가시스템에 자료제출 필요)
담당자	행안부 공공데이터관리과 **홍종윤 주무관(044-205-2491)**, NIA **김재성 책임(053-230-1539)**		

④-②-1. 데이터 품질진단(9점)

DB 품질진단 수행에 필요한 대상 테이블과 컬럼을 식별하고, 진단대상 컬럼에 대해 업무규정·법령·지침 등에 따라 데이터 검증 및 진단기준을 정의하고 품질진단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평가 방법]

[평가기준]

번호	기 준	배점	
		A기관	B기관
1	**품질진단 기준 정의 및 진단**	4.5점	4점
2	**품질진단 규칙(BR) 정의 및 진단**	4.5점	4점

※ **A기관** :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B기관** : 기초,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점수산정]

■ 평가 산식 :

· 점수 = $\frac{\text{진단·평가 대상 DB의 지표점수 합계}^{2)}}{\text{진단·평가 대상 DB 수}^{1)}}$

1) 기관에서 선정 기준(보유 DB의 55%)에 따라 선정한 '24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DB 수
2) DB별 점수 산정 기준

■ 기준1 : 품질진단 기준 정의 및 진단

- DB 품질진단을 수행할 **테이블 및 컬럼**을 **선정**하고, 진단 대상으로 선정한 **모든 컬럼**에 대해 **진단기준**을 **정의**하여 이에 따라 **진단**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평가
- 범정부 진단기준 충족률 = 진단 대상 테이블 수행 비율 x 진단 대상 컬럼 수행 비율

※ (예시) 진단대상 테이블 10개 중 9개 수행(90% 충족), 진단 대상 컬럼 100개 중 98개 수행(98% 충족)일 경우, 범정부 진단기준 충족률 = 90% x 98% = 88.2%

진단·평가기준	점수	
	A기관	B기관
범정부 진단기준 충족률 100%	4.5점	4점
범정부 진단기준 충족률 90% 이상	4점	3.5점
범정부 진단기준 충족률 80% 이상	3.5점	3점
범정부 진단기준 충족률 70% 이상	3점	2.5점
범정부 진단기준 충족률 70% 미만 및 미제출	0점	0점

- **품질진단 기준**은 품질진단 대상 컬럼에 매핑되어 관리되어야 함(즉, 품질진단 대상 컬럼에 매핑된 품질진단 기준이 식별되어야 함)
 · 진단기준 : 범정부 데이터 품질진단기준(16개 항목) ※ [참고1] 데이터 품질진단 기준(51쪽)
 · 진단대상 : 범정부 데이터 품질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전체 테이블 및 컬럼 ※ [참고2] 품질진단 범위조정 및 절차(52쪽)
- 대용량 DB 등 품질진단 수행 시 정보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진단대상(테이블 및 컬럼)을 행정안전부·NIA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협의 조정된 경우, 진단 대상 모수에서 제외됨)

■ 기준2 : 품질진단 규칙(BR) 정의 및 진단

- 업무규정·법령·지침 등에 위배되는지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 **업무규칙(품질진단 규칙)**을 **정의**하여 이에 따라 **진단**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평가

진단·평가기준	점수	
	A기관	B기관
업무규칙 8개 이상 정의·진단	4.5점	4점
업무규칙 5개 이상 7개 이하 정의·진단	3.2점	
업무규칙 2개 이상 4개 이하 정의·진단	2점	
업무규칙 1개 정의·진단	0.5점	
업무규칙 미적용	0점	0점

※ **A기관** :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B기관** : 기초,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 **업무규칙(BR) 정의서**에는 필수적으로 '업무규칙명', '업무규칙내용', '스크립트', '근거규정'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업무규칙의 근거규정은 반드시 진단·평가대상 DB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참고해야 하는 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으로 매우 구체적이어야 함
 · 업무규칙의 근거규정이 없는 홈페이지, 내부업무 시스템 등은 자체적으로 DB별 업무규칙을 관리하는 '업무규칙 정의서' 등을 근거로 진단을 수행하여도 인정

[제출자료] 평가시스템에 아래의 자료 제출 필요

■ 기준1 : 진단결과 보고서

※ 데이터 품질진단 대상 정의 및 데이터 품질진단 기준 정의 내역 포함

■ 기준2 : 진단결과 보고서

※ 업무규정에 따른 품질진단 규칙 정의 내역 포함

참고1 데이터 품질진단 기준

구분	진단유형	진단유형 설명	DB 진단
정합성 진단	시간순서 일관성	시간순서 관계를 갖는 컬럼 간의 데이터 오류 측정	O
	선후관계 정확성	선후관계를 가지는 컬럼 간의 데이터 오류 측정	O
	논리관계 일관성	컬럼 간 논리적 일관성 오류를 측정	O
	계산식	계산값이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측정	O
	참조관계	참조하는 컬럼과 참조되는 컬럼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O
완결성 진단	글자깨짐	컬럼명, 데이터 값에 깨진 글자 또는 완성된 한글이 아닌 데이터 오류 측정	O
	공백, 특수문자	컬럼명, 데이터 값에 불필요한 공백과 특수문자가 입력된 오류 측정	O
	필수값	데이터의 특성 상 반드시 입력되어야 하는 값은 누락 없이 제공되어야 함	O
	중복데이터	DB 내 두 개 이상 테이블(또는 파일)에 존재하는 동일한(중복) 데이터의 값 일치 여부 측정	O
유효성 진단	날짜 도메인	날짜 데이터값이 유효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형식이 표준을 위배한 데이터 오류 측정	O
	번호 도메인	번호생성 규칙을 위배한 경우 오류 측정	O
	여부 도메인	컬럼의 저장된 값이 유효값(2개의 값)의 범위를 벗어나는 데이터 오류 측정	O
	코드 도메인	원천 DB에서 표준으로 정의한 코드값 이외 데이터 오류 측정	O
	금액 도메인	금액 데이터 이외 문자가 입력되어있는 컬럼의 데이터 오류 측정	O
	수량 도메인	수량 데이터 이외 문자가 입력되어있는 컬럼의 데이터 오류 측정	O
	율 도메인	율 데이터 이외 문자가 입력되어있는 컬럼의 데이터 오류 측정	O

참고2 품질진단 범위 조정 및 절차

❍ 활용성 높은 주요 데이터 중심으로 품질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에서 품질진단 **범위조정 요청 시, 검토 후 범위조정**

- **(테이블, 컬럼 제외)** 임시, 백업, 로그 기록, 뷰, 시스템관리 테이블 등에 대해 **품질진단 제외 가능**(품질진단도구에서 사유 입력, 공문제출 불필요)
- 과거 데이터의 단순 저장(보존), 법령이나 관련 업무 지침 변경으로 데이터 관리 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 검토 및 심의 후 진단범위 조정 가능(공문 제출 필요)

※ [붙임3] 'DB 진단 범위조정 신청서'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제출

구분		예시
데이터 범위 조정 (공문제출 필요)		▶ 과거 데이터를 기록 차원에서 단순보존하고 있는 경우 예시) 과거 수기기록 행정데이터의 단순보존 등
		▶ 법령, 지침, 고시 등의 변경이나 기관 수행 업무의 변경 등으로 데이터를 더이상 수집 및 관리하지 않고 단순보존만 하는 경우
		▶ 삭제된 데이터를 단순 보존하는 경우 예시)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지만, 삭제된 데이터를 보존하는 경우
진단대상 테이블 및 컬럼 조정 (공문제출 불필요)	임시테이블	▶ 개발 등의 목적으로 임시 생성된 테이블 예시) _TEMP, _TMP, _TEST 등
	백업 테이블	▶ 백업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중복 생성한 테이블 예시) _BAK, _BACKUP, 특정 날짜(_20200202) 등
	로그 기록 테이블	▶ 시스템의 로그를 기록한 테이블 예시) 일반적으로 _LOG 등의 명칭을 포함
	뷰 테이블	▶ 사용자에게 접근이 허용된 자료만을 제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된 가상 테이블 예시) _VIEW, _VW 등
	시스템관리 테이블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등 시스템관리의 목적으로 생성된 테이블 예시) SYS, DB 시스템 테이블, PLAN(실행계획) 테이블 등

※ 이외 기타 사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1600-2187)에 문의

❍ **(절차)** DB 담당자가 진단범위 조정 신청서(붙임)를 작성해서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공문으로 제출, 검토 및 심의 후 기관 및 DB담당자에게 최종 확정 통보(공문)

단계	진단범위 조정 요청(공문)		검토 및 심의		최종 확정(공문)
수행 내용	테이블/컬럼 : 품질진단도구에 사유 입력 진단범위 : 조정 신청서 작성	⇨	제외사유 및 진단범위 조정 검토	⇨	검토결과 기관 통보

4-②-2. 데이터 오류율(9점)

품질진단 대상 DB의 데이터 오류율(최종) 진단·평가

[평가 방법]

[평가기준]

- 범정부 데이터 품질진단 기준*에 의한 진단대상 DB의 데이터 오류율을 진단·평가

 * 범정부 데이터 품질진단 기준(16개: 시간순서 일관성, 선후관계 정확성, 논리관계 일관성, 계산식, 참조관계, 글자깨짐, 공백 및 특수문자, 필수값, 중복데이터, 도메인(날짜, 번호, 여부, 코드, 금액, 수량, 율)) 및 설정한 업무규칙으로 오류율 측정

[점수산정]

■ **평가 산식 :**

· 점수 = $\frac{\text{진단·평가 대상 DB의 지표점수 합계}^{2)}}{\text{진단·평가 대상 DB 수}^{1)}}$

1) 기관에서 선정 기준(보유 DB의 55%)에 따라 선정한 '24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DB 수
2) DB별 점수 산정 기준

■ **데이터 오류율 산정 기준 :**

데이터품질오류율(%) = $\frac{\text{오류데이터건수}^{b)}}{\text{진단대상DB 전체 데이터 건수}^{a)}}$ X 100

a) 진단대상DB 내 품질진단을 수행한 전체 데이터 건수
b) 진당대상DB 내 품질진단을 수행한 전체 데이터 중 오류가 발견된 건수

진단·평가기준	점수	
	A기관	B기관
오류율 0.01% 미만	9점	7점
오류율 0.1% 미만	7.2점	6점
오류율 0.5% 미만	5.4점	5점
오류율 1.0% 미만	3.6점	4점
오류율 1.0% 이상	1.8점	2점
미수행	0점	0점

※ **A기관** :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B기관** : 기초,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와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국토부 소관) 대상 DB가 중복되는 경우 공간정보 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건수를 합산하여 해당 DB의 점수 산정
※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국토부 소관)에서만 진단대상 DB로 선정된 경우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품질 오류율)를 해당 DB의 점수로 산정하고, 지표 점수 산정 시 반영
※ 공간정보 DB 품질관리 수준평가에 대한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

[제출자료] 평가시스템에 아래의 자료 제출 필요

■ **품질진단 결과보고서(최종)**

※ '데이터 품질진단' 지표는 최초 진단결과, 본 지표는 최종 진단결과 제출

○ 「④-③ 진단결과 조치」 지표

지표 정의	각 기관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DB의 품질 제고를 위해 수행하는 품질진단 결과에 따하 개선조치 계획수립 및 조치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 평가		
배점	**9점**	**방식**	**정량** (평가시스템에 자료제출 필요)
담당자	행안부 공공데이터관리과 **홍종윤 주무관(044-205-2491)**, NIA **김재성 책임(053-230-1539)**		

[평가 방법]

[평가기준]

번호	기 준	배점
1	**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4점
2	**개선조치 이행률**	5점

[점수산정]

■ **평가 산식 :**

· 점수 = $\frac{\text{진단·평가 대상 DB의 지표점수 합계}^{2)}}{\text{진단·평가 대상 DB 수}^{1)}}$

1) 기관에서 선정 기준(보유 DB의 55%)에 따라 선정한 '24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DB 수
2) DB별 점수 산정 기준

■ **기준1 : 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 DB의 표준, 구조, 연계, 데이터 값에 대한 품질 진단결과(데이터 표준관리, 데이터 구조관리, 데이터 연계관리, 데이터 품질진단)를 분석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평가
- 품질진단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과제 정의 산정 기준

진단·평가기준		점수
품질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 수립	데이터 값 오류율, 표준, 구조, 연계관리 개선과제 모두 포함	4점
	데이터 값 오류율 개선과제만 포함	3점
	데이터 값 오류율 개선 외 과제(표준, 구조, 연계관리 모두)만 포함	2점
개선계획 미수립		0점

※ 각 지표별 충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개선할 오류가 없는 DB의 경우 4점 부여
* 데이터 표준관리(데이터 표준 정의 조건 및 표준 적용률 100% 충족), 데이터 구조관리(데이터 구조 산출물 관리 조건 및 현행화율 100% 충족), 데이터 연계관리(관리 정보 정의 및 송·수신 내역 관리 조건 모두 충족), 데이터 품질진단(범정부 진단기준 충족률 100% 및 업무규칙 8개 이상 설정·진단), 데이터 오류율(오류율 0%)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와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국토부 소관) 대상 DB가 중복되는 경우 공간정보 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건수를 합산하여 해당 DB의 점수 산정

※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국토부 소관)에서만 진단대상 DB로 선정된 경우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품질 오류율)를 해당 DB의 점수로 산정하고, 지표 점수 산정 시 반영

※ 공간정보 DB 품질관리 수준평가에 대한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

■ **기준2 : 개선조치 이행률**

- 데이터 품질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평가

※ 데이터 품질 점검·개선 내역 등 개선조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고 및 관리하여야 함

- 평가 산식 :

· 점수 = $\frac{\text{수행완료 과제 건수}^{b)}}{\text{개선계획 과제 건수}^{a)}}$ X 5

a) '23년 개선계획의 개선과제 중 과제완료 시점이 '23.11.1.~'24.9.30.인 과제건수
+ '24년 개선계획의 개선과제 중 완료시점이 '24.9.30.까지인 과제 건수

b) a)의 개선계획의 개선과제 건수 중 '24.9.30.까지 개선 완료된 과제 건수

[제출자료] 평가시스템에 아래의 자료 제출 필요

■ **기준1 :** 데이터 품질 개선계획

※ 내부결재 등 공식적인 문서 포함

■ **기준2 :** 개선조치 결과보고서

※ 데이터 품질개선 조치결과 및 과제수행 증빙, 내부결재 등 공식적인 문서 포함

5. 관리체계 영역

< 평가목적 >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관의 기반 구축 및 교육 참여 노력 평가

지표구성	배점							방식
	중앙	광역	기초	공기업·준정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	시도교육청	
① 추진기반 조성	**8**	**8**	**8**	**8**	**8**	**8**	**8**	정량
공공데이터 제공	4	4	4	4	4	4	4	
데이터기반행정	4	4	4	4	4	4	4	
②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교육 참여	**6**	**6**	**6**	**6**	**6**	**6**	**6**	

○ 「5-① 추진기반 조성」 지표

지표정의	공공데이터/데이터기반행정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관의 추진기반 조성 노력을 평가		
배점	**8점** (공공데이터 제공 4점 / 데이터기반행정 4점)	**방식**	**정량** (세부지표별 [평가 방법] 내 [제출자료] 참조)
담당자	**(공)**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신동렬 주무관(044-205-2476),** NIA **김민규 책임(053-230-1547)** **(데)**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 **김경숙 주무관(044-205-2475),** NIA **김소영 수석(053-230-1597)**		

5-①-1, 5-①-2. 공공데이터 제공(4점)

[평가 방법]

[평가기준]

번호	세부지표	배점
1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조직·인력 운영 여부**	**2점**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실무담당자 임명 및 공공데이터포털·기관홈페이지 등록	(1점)
	-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 전담부서 및 인력 운영	(1점)
2	**'24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여부**	**2점**

[제출자료]

■ **1번 : 평가시스템에 아래의 자료 제출 필요**

㉮ 책임관 직급, 소속, 성명 등이 포함된 임명 관련 공식자료(내부결재, 대내외시행 등)

㉯ 공공데이터책임관/실무담당자 임명 관련 홈페이지 공표 내역

㉰ 기관별 직제시행규칙(중앙행정기관),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지자체), 조직도 및 직제규정(그 외 기관), ㉱ 전담부서(각 기관의 최하 조직 단위) 업무분장표

■ **2번 :**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제출한 기관별 '24년 시행계획(한글·엑셀서식)으로 평가하므로 (양식에 맞춰 완성된 자료만 인정),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참고사항]

[주요 불인정 사례]

■ 공표된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실무담당자가 기관 홈페이지와 공공데이터포털이 다를 경우

5-①-1, 5-①-2. 데이터기반행정(4점)

[평가 방법]

[평가기준]

번호	세부지표	배점
1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조직·인력 운영 여부**	**2점**
	-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	(1점)
	-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전담부서 및 인력 운영	(1점)
2	**'24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여부**	**2점**

[증빙자료]

■ **1번 : 평가시스템에 아래의 자료 제출 필요**

㉮ 책임관 직급, 소속, 성명 등이 포함된 임명 관련 공식자료(내부결재, 대내외시행 등)

㉯ 기관별 직제시행규칙(중앙행정기관),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지자체), 조직도 및 직제규정(그 외 기관), ㉰ 전담부서(각 기관의 최하 조직 단위) 업무분장표

■ **2번 :**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제출한 기관별 '24년 시행계획(한글·엑셀서식)으로 평가하므로 (양식에 맞춰 완성된 자료만 인정),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참고사항]

[주요 불인정 사례]

■ 부서 직제 및 담당자 업무분장에 '데이터기반행정'이라고 명시되지 않고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관리, 데이터 운영 등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 '부서명'에 데이터기반행정을 포함하라는 의미가 아니며, 부서 직제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함

○ 「5-②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교육 참여」 지표

지표 정의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데이터 품질 등 관련 교육 수강 여부를 평가		
배점	6점	방식	**정량** (교육시스템에서 집계)
담당자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신동렬 주무관(044-205-2476)**, NIA **김민규 책임(053-230-1547)**		

[평가 방법]

[평가기준]

구분	기 준	배점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모든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의 교육 이수 여부	3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모든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및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대상 DB 업무담당자의 교육 이수 여부	3점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소속기관 담당자도 교육 이수 대상에 포함

[교육 이수 관련]

■ 교육 관련 세부사항은 6월 중으로 **공문** 및 **평가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예정

* 목록등록관리시스템 > 기관 시스템 연계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공지사항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교육**

-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가 이수해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및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대상 DB 업무담당자 전원이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 아래 표의 이수기준을 모두(①, ②) 충족하면 3점, 하나만 충족하면(① 또는 ②) 1.5점 획득

구분	이수기준
①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품질관리' 교육과정 1개 이상 이수
②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대상 DB 업무담당자	'품질진단' 교육과정 1개 이상 이수

[제출자료]

■ 교육시스템(미정)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집계하므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참고사항]

[주요 불인정 사례]

■ **행안부가 지정·제공하는 교육이 아닌 경우**(예: 설명회 참석, 기관 자체교육 등)

Ⅲ FAQ

FAQ 1	제출자료는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 목록등록관리시스템(all.data.go.kr) > 기관 시스템 연계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평가항목으로 이동·접속하여 지표별 실적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 시스템 개편 중으로, 개편 완료 시 시스템 사용 방법 등은 별도로 안내 예정

FAQ 2	9월말 실적 등록 이후에 제출자료를 보완할 수 있나요?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출자료를 보완할 수 없으며 요구되는 자료 일체를 반드시 실적 등록기간까지 평가시스템에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 특히, 제출자료에서 실적 인정기간('23.9.1.~'24.8.31.) 내의 실적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식 계획 및 결과보고서, 사진, 캡쳐 등 제출되는 자료에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FAQ 3	N/A 처리항목의 점수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해당 지표(항목)의 타 기관 평균 점수로 산정합니다.

※ 기관 유형별로 배점이 다른 지표의 경우에도, 해당 지표(항목)의 배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 N/A처리 점수산출 예시 >

(가정) 기관유형에 따라 10점, 8점으로 배점이 다른 '가' 지표에 대해, 10점 배점이 적용된 120개 기관의 해당 지표 평균 점수는 9점이고, 8점 배점이 적용되는 80개 기관의 평균 점수는 4점인 경우,

(예시1) 'A'기관이 '가'지표에 대해 10점 배점이 적용된 기관 유형이면서 N/A 처리 대상인 경우,

☞ 점수산출 결과 : $\frac{(120\times 9)+(80\times(4\times 1.25))}{120+80}$ = 7.4점

(예시2) 'A'기관이 '가'지표에 대해 8점 배점이 적용된 기관 유형이면서 N/A 처리대상인 경우,

☞ 점수산출 결과 : $\frac{(120\times(9\times 0.8))+(80\times 4)}{120+80}$ = 5.92점

FAQ 4	평가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목록등록관리시스템(all.data.go.kr) > 기관 시스템 연계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평가항목으로 이동·접속하여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시스템 개편 중으로, 개편 완료 시 평가결과 확인방법을 별도 공지 예정

첨부1 2024년 평가대상 기관 목록

기관유형	기관명		비고
중앙 행정 기관 (46개)	부 (19개)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 행정법, 정부업무 평가법
	처·청 (21개)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재외동포청,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질병관리청	
	위원회 (6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광역 자치단체 (17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기초 자치단체 (226개)	**(강원도)**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경상남도)**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구광역시)** 군위군,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전라남도)**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전라북도)**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기관유형		기관명	비고
기초 자치단체 (226개)	**(충청남도)** **(충청북도)**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 행정법, 정부업무 평가법
공공기관 (373개)	시장형 공기업 (14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산업부)**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 행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준시장형 공기업 (18개)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2개)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3개)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관유형	기관명		비고
공공기관 (373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3개)	**(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 행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타공공기관 (240개)	**(국조실)** 건축공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통일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잡월드,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과기부)**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기관유형	기관명		비고
공공기관 **(373개)**	기타공공기관 (240개)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국토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재단법인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항공안전기술원, 재단법인건설기술교육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립항공박물관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단법인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문체부)** (재)한국저작권보호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전당, 재단법인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훈부)** 88관광개발(주), 독립기념관 **(복지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재단법인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장애인개발원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 행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관유형	기관명		비고
공공기관 **(373개)**	기타공공기관 (240개)	**(산업부)** 재단법인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전엠씨에스주식회사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중기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식회사공영홈쇼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주)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행안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 **(기상청)** APEC기후센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 행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관유형	기관명		비고
공공기관 **(373개)**	지방 공기업 (46개)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통계청)** (재)한국통계정보원 **(특허청)** 재단법인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도시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 대전교통공사 **(도시개발공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특정공사·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경기교통공사 **(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대전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시설관리공사·공단)**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 **(환경시설공사·공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부산환경, 대전시설, 대구공공시설, 인천환경, 광주환경,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 행정법, 지방공기업법
시도 교육청 **(17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 행정법

첨부2-1 **〔지표1-⑤-1〕 저활용 데이터 활용도 제고 방안 보고서 작성양식**

〔기관명〕 저활용 데이터 활용도 제고 방안 보고서 〔지표1-⑤-1〕

※ 자료 제출 시 청색 글씨, 이탤릭체, 박스 등 작성 참고사항은 삭제하여 제출

※ (작성 분량) 아래 목차를 준용하여 **3장 이내 작성**(증빙자료*는 분량 제한 없음)

* 작성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증빙자료는 공식 계획, 사진, 캡쳐 자료 등으로 정확한 날짜 확인이 가능해야 함),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실적 등록) 본 보고서와 증빙자료는 평가시스템에 등록

※ (파일 구성) 1. 아래의 실적보고서 파일 1부

2. 다수의 증빙자료를 하나로 묶은 PDF 파일 1부

□ 현황 및 원인 분석

설문조사, 인터뷰, 간담회, 연구용역, 자체분석 등을 통해 기관 개방데이터 중 활용도 낮은 데이터의 현황과 저활용의 원인(문제점, 개선 필요사항) 분석

○

-

□ 개선방안

기관 개방데이터 중 저활용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예시) 분석된 원인을 기반으로 데이터 정비, 타 기관·민간과의 협력, 활용지원, 대국민 홍보, 설명회 개최 등

○

-

첨부2-2 **(지표1-⑤-2) 개방데이터 활용 민간서비스 우수사례 보고서 작성양식**

(기관명) 개방데이터 활용 민간서비스 우수사례 보고서(지표1-⑤-2)

※ 자료 제출 시 청색 글씨, 이탤릭체, 박스 등 작성 참고사항은 삭제하여 제출

※ (작성 분량) 아래 목차를 준용하여 **5장 이내 작성**(증빙자료*는 분량 제한 없음)

*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증빙자료는 공식 계획 및 결과보고서, 내부결재 문서, 사진, 캡쳐, 보도자료 등으로 정확한 날짜 확인이 가능해야 함),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실적 등록) 본 보고서와 증빙자료는 평가시스템에 등록

※ (파일 구성) 1. 아래의 실적보고서 파일 1부

2. 다수의 증빙자료를 하나로 묶은 PDF 파일 1부

□ (서비스1) *서비스명*

활용된 기관 개방데이터, 서비스의 주요내용, 서비스 창출을 위한 기관의 노력, 서비스 파급효과 등 내용을 포함하여 기관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서비스 우수사례를 하나의 스토리로 작성

○ 활용 데이터

-

○ 서비스 주요내용

-

○ 서비스 창출을 위한 기관의 노력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설명회, 홍보 노력 등은 인정되지 않음

-

○ 서비스 파급효과

-

□ (서비스2) *서비스명*

※ 위와 동일한 목차로 서비스 2~5 작성

첨부2-3 **〔지표1-⑤-3〕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타 시책 추진 보고서 작성양식**

〔기관명〕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타 시책 추진 보고서〔지표1-⑤-3〕

※ 자료 제출 시 청색 글씨, 이탤릭체, 박스 등 작성 참고사항은 삭제하여 제출

※ (작성 분량) 아래 목차를 준용하여 **8장 이내 작성**(증빙자료*는 분량 제한 없음)

*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증빙자료는 공식 계획 및 결과보고서, 내부결재 문서, 사진, 캡쳐, 보도자료 등으로 정확한 날짜 확인이 가능해야 함),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실적 등록) 본 보고서와 증빙자료는 평가시스템에 등록

※ (파일 구성) 1. 아래의 실적보고서 파일 1부

2. 다수의 증빙자료를 하나로 묶은 PDF 파일 1부

1 활용지원

기관에서 개방한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 기업간담회·인터뷰·설명회 등을 통한 활용지원 수요 파악, 민관협력 파트너십 운영,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해커톤·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

** 유관·상위기관 등과 공동 개최도 가능하나, 공동 개최 시 각 기관담당자의 참석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실적인정*

□ 추진내용

○

-

□ 추진성과

○

-

2 대국민 홍보

기관 개방데이터 관련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노력

□ 추진내용

○

-

□ 추진성과

○

-

3 기타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기타 노력

※ (예시) 전국 통합성데이터 사업, 국가중점데이터 사업 등 데이터 개방 관련 사업 참여, 개방데이터 정비 결과 등

□ 추진내용

○

-

□ 추진성과

○

-

첨부2-4 **〔지표2-①, ②, ③〕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분석/정책활용' 실적 작성양식**

〔기관명〕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분석/정책활용' 실적
〔지표2-①, ②, ③〕

※ 자료 제출 시 청색 글씨, 이탤릭체, 박스 등 작성 참고사항은 삭제하여 제출

※ (작성 분량) 아래 목차를 준용하여 **2장 이내 작성**(증빙자료*는 분량 제한 없음)

*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증빙자료는 공식 계획 및 결과보고서, 내부결재 문서, 사진, 캡쳐, 보도자료 등으로 정확한 날짜 확인이 가능해야 함),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실적 등록) 본 보고서와 붙임자료, 별첨자료는 평가시스템에 등록

※ (파일 구성) 1. 아래의 실적 개요 보고서 파일 1부
2. 발굴 실적 증빙자료 PDF 파일 1부
3. 정원 증빙자료 PDF 파일 1부

< 작성 참고사항 >

(발굴) 데이터 분석 발굴과제 관련 메모보고, 결재문서 등 증빙자료
(정원) 본부·본청·본원·본사 정원이 기재된 규칙·조례·공시(알리오·클린아이) 등 공식적인 문서

- '분석', '정책활용'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insight.go.kr)_[기관 분석사례]' 게시판에 업로드한 내용*으로 갈음

* '범정부데이터분석시스템(insight.go.kr)_[기관 분석사례]' 게시판에 안내된 등록 방법에 따라 분석·활용 실적 및 증빙서류*(메모보고, 내부 결재문서, 결과보고서 등) 등록

□ 정원 : 000명 (지표 기준 정원)

전체 정원(A)	본부·본청 정원(B)	본부·본청 정원 중 제외 직군·직렬(C)		지표기준 정원 (B - C)
100	*80*	공무직	*10*	*60*
		상담직	*10*	

□ 추진 실적

구 분	목표	실적
2-①.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실적	○○건	○○건
2-②. 데이터 분석 실적	○○건	○○건
2-③. 데이터 분석결과의 정책활용 실적	○○건	○○건

□ 2-①, ②, ③ 데이터 발굴·분석·정책활용 과제목록

연번	과제명	실적 (○,× 표시)			수행시기
		발굴	분석	정책 활용	
1	*초등돌봄 수요 예측*	○	○	○	(발굴) (분석) (활용)
2	*CCTV 최적 입지 분석*	○	○	×	(발굴) (분석)
3	*교통 신호·통행 분석*	○	×	×	(발굴)
총계 (건수)		*00*	*00*	*00*	

※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insight.go.kr)’에 등록한 과제명과 동일하게 작성

첨부2-5 **〔지표2-④〕 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 노력 및 실적 작성양식**

〔기관명〕 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 노력 및 실적 개요 〔지표2-④〕

※ 자료 제출 시 청색 글씨, 이탤릭체, 박스 등 작성 참고사항은 삭제하여 제출

※ (작성 분량) 아래 목차를 준용하여 **2장 이내 작성**(증빙자료*는 분량 제한 없음)

*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증빙자료는 공식 계획 및 결과보고서, 내부결재 문서, 사진, 캡쳐, 보도자료 등으로 정확한 날짜 확인이 가능해야 함),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실적 등록) 본 보고서와 붙임자료, 별첨자료는 평가시스템에 등록

※ (파일 구성) 1. 아래의 실적 개요 보고서 파일 1부
2. '붙임1, 붙임2, 별첨'을 하나로 묶은 한글 파일 1부
3. 붙임3 엑셀파일 1부

< 작성 참고사항 >

붙임 1. (역량진단 결과 및 개선계획)
역량진단 결과 내역을 포함하여 74쪽 양식에 따라 2페이지 내외로 작성

붙임 2. (전문교육) 교육이수 내역에 대해 아래 증빙자료 제출
① 교육 이수증
② 데이터기반행정 실무담당자가 아닌 경우 동일부서 증빙 서류
(기관 홈페이지 부서원 명단 발췌 등)
③ 오프라인 교육임을 확인하기 위해 이수한 교육안내물

붙임3.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실무자·관리자** 교육)
직급, 성명이 포함된 교육이수자 명단을 다음 서식에 따라 엑셀파일로 작성

번호	수료기관명	교육명	성명	부서명	직급	수료일자	*수료증번호
	※ 기관 자체 교육은 '자체교육'으로 명기						'자체교육'은 생략 가능

※ 관련 교육 추천 목록은 '[참고]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 목록' 참조(p.75)

※ 수료증 번호가 없는 데이터 분석·활용 교육을 수강한 경우엔 수료증 별첨 필요

별첨. (교육대상자) 직제 시행규칙, 조례, 공시(ALIO, 클린아이시스템 등), 기관 내부자료(내부결재 공문, 정보시스템 캡쳐, 총무·인사부서로부터 받은 이메일 등 공식적인 인정이 가능한 자료) 등 본부·본청·본원·본사 정원이 기재된 공식자료

※ 직원과 관리자를 정원표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제출

□ 데이터 분석·활용역량 진단 결과 및 개선계획

번호	구 분	수행기간	추진 여부	증빙
1	데이터 분석·활용역량 진단 실시		O/X	붙임1
2	데이터 분석·활용역량 개선계획 수립		O/X	

□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

번호	구 분	교육대상자*	교육 이수 인원	증빙
1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교육 (2인 이상)	[교육수료자 명단] 총 00명 1. (부서명) (성명) 2. (부서명) (성명)		붙임2
2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실무자 교육 (직원 정원 대비 50%이상 교육)	○○○명	○○○명	붙임3
3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관리자 교육 (보직자·관리자 직급 정원 대비 30%이상 교육)	○○○명	○○○명	붙임3

*** 교육대상자 기준** (기관 정원 범위 : 본부·본청·본원·본사 기준)

대상기관	일반직원 정원	관리자 직급* 이상 정원	증빙
본부・본청	○○명	○○○명	별첨
전체** (본부·본청 外까지 포함)	○○○명	○○○명	

*관리자 직급은 '과장급 이상'의 의사결정권자를 의미 / **본부(본청 등)만 평가대상이지만 참고용으로 제출

< 관리자 직급 기준 참고사항 >

- 중앙부처 직책 기준 과장급(3, 4급) 이상을 의미함

중앙부처 직책	***공무원***
실장	*고위공무원단 가급 / 1급*
국장	*고위공무원단 나급 / 2, 3급*
과장	*3, 4급*
담당	*4~9급*

- 광역지자체의 경우, 4급 과장급 이상을 의미함

- 기초지자체의 경우, 5급 과장급 이상을 의미함

- 공공기관의 경우, 결재권한이 있는 보직자 직급 이상을 의미함

(기관명) 데이터 분석·활용역량 진단 결과 및 개선계획(지표2-④ 붙임1)

※ 자료 제출 시 청색 글씨, 이탤릭체, 박스 등 작성 참고사항은 삭제하여 제출
※ (작성 분량) 역량진단 결과 내역을 포함하여 양식에 따라 2장 내외로 작성

□ 역량진단 결과

○ 진단 도구(방법)

-

○ 진단 시기

-

○ 진단 대상

-

○ 진단 결과 요약

-

※ 역량진단 결과보고서 첨부

□ 개선계획

○ 개선분야 및 문제점

-

○ 개선방향

-

□ 추진일정

○

-

참고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 목록

㊐ 행정안전부 데이터역량강화학습지원시스템 ㊊이러닝(나라배움터)

대분류	중분류	교육내용
1. 기획	1 데이터 전략 수립	㊐㊊ 디지털 혁신의 비밀 데이터 문제해결력 ㊐㊊ 데이터 리더십 ㊐ (집합) 맞춤형 사례기반 : 민원데이터 분석 과정 ㊐ (집합) 맞춤형 사례기반 : 공공시설물 최적 입지 분석 과정 ㊐ (집합) 맞춤형 사례기반 : 복지·교통 분석 과정
	2 데이터 중심 조직관리	
	3 데이터 성과관리	
	4 분석과제 기획	
2. 수집	5 데이터 이해	㊐㊊ 과학기술의 발전 경험에서 데이터 과학까지 ㊐㊊ 데이터로 답하라 ㊐㊊ 데이터 마인드 ㊐㊊ 뉴노멀 생존전략 디지털리터러시
	6 데이터 수집	
3. 분석	9 데이터 탐색	㊐㊊ 데이터 분석 따라하기 ㊐ (집합) EXCEL/ORANGE을 활용한 실무분석 과정 ㊐ (집합) EXCEL/POWER QUERY를 활용한 실무분석 과정 ㊐ (집합) 파이썬/ChatGPT를 활용한 파이썬 코드 리터러시 분석 과정 ㊐ (집합) 파이썬을 활용한 머신러닝 분석 과정 ㊐ (집합) 파이썬/Tensorflow/Pytorch를 활용한 딥러닝 분석과정
	10 분석모형 설계	
	11 분석 수행	
4. 시각화	12 시각화 기획	㊐㊊ 노코딩으로 도전하는 데이터 분석 ㊐㊊ 엑셀 하나로 나의 보고서가 달라진다! 데이터분석 기초편 ㊐㊊ 엑셀기반 시각화과정 ㊐ (집합) EXCEL/POWER BI/파이썬을 활용한 시각화 분석과정
	13 데이터 시각화	
5. 정책 활용	14 분석결과 해석	㊐㊊ 데이터 리더의 첫걸음 ㊐㊊ 데이터 리더쉽 ㊐㊊ 디지털 정책소통의 성공포인트 ㊐㊊ 데이터기반행정과 데이터 리터러시 ㊐㊊ 데이터 리더의 D.Live, 궁금증에 답하다 ㊐ (집합) 관리자 One-Day 특강
	15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 ㊐(집합), 행정안전부 주관의 집합교육은 5월 초 공지 예정이며 세부 교육내용과 명칭은 변경될 수 있음

※ 이외 멀티캠퍼스, 통계교육원 등에서의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도 역량강화 실적으로 인정

첨부2-6 **〔지표2-⑤-1〕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 보고서 작성양식**

〔기관명〕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 보고서 〔지표2-⑤-1〕

※ 자료 제출 시 청색 글씨, 이탤릭체, 박스 등 작성 참고사항은 삭제하여 제출

※ (작성 방법) 각 기관에서 데이터 분석·활용을 정책 수립에 활용한 **대표사례 1건**을 아래 목차를 준용하여 **5장 이내**로 작성(증빙자료*는 분량 제한 없음)

*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증빙자료는 공식 계획 및 결과보고서, 내부결재 문서, 사진, 캡쳐, 보도자료 등으로 정확한 날짜 확인이 가능해야 함),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실적 등록) 본 보고서와 증빙자료는 평가시스템에 등록

※ (파일 구성) 1. 아래의 우수사례 보고서 파일 1부
2. 다수의 증빙자료를 하나로 묶은 PDF 파일 1부

< 작성 참고사항 >

- *기관 단독수행 과제뿐만 아니라 다수 기관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수행한 협업과제나 타 기관의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과제에 대하여도 작성 가능*
 (예)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과제
- *대표 우수사례는 분석 및 정책활용 모두 실적인정 기간('23.10.1~'24.8.31)내 성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단, 기초 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교육청의 경우 정책활용 실적이 없을 시 '정책활용 계획'으로 대체 가능 (분석은 실적이 있어야 함)*
 ※ 중앙·광역·공기업·준정부 기관은 실적없이 계획만 제출 한 경우 감점요소가 될 수 있음

□ 추진 개요

○ (과제명)

○ (추진배경 및 목표)

-

○ (주요성과) *※ 분석결과 및 정책활용 성과 내용 요약*

-

□ 데이터 분석

○ (분석기법)

-

○ (분석결과)

-

○ 활용된 데이터 내역

연번	데이터명	내용	출처	비고

□ 정책활용 성과

○

-

○

-

※ 데이터 분석결과를 정책에 활용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사후관리

○

-

※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관리체계 마련 등 작성

- (예시) 현안업무 개선을 위한 시스템 모니터링 및 추가 분석 진행 예정

첨부2-7 **〔지표2-⑤-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타 시책 추진 보고서 작성양식**

〔기관명〕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타 시책 추진 보고서 〔지표2-⑤-2〕

※ 자료 제출 시 청색 글씨, 이탤릭체, 박스 등 작성 참고사항은 삭제하여 제출

※ (작성 분량) 아래 목차를 준용하여 **5장 이내 작성**(증빙자료*는 분량 제한 없음)

*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증빙자료는 공식 계획 및 결과보고서, 내부결재 문서, 사진, 캡쳐, 보도자료 등으로 정확한 날짜 확인이 가능해야 함),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실적 등록) 본 보고서와 증빙자료는 평가시스템에 등록

※ (파일 구성) 1. 아래의 실적보고서 파일 1부

2. 다수의 증빙자료를 하나로 묶은 PDF 파일 1부

1 문화조성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 경진대회 등의 행사 개최(또는 참여), AI 회의록 활용 등 데이터 분석시스템의 활용 등

□ 추진내용

○

-

□ 추진성과

○

-

2 성과 확산 및 홍보

데이터 분석·활용 성과 확산을 위한 설명회, 관계자 간담회, 보도자료 배포, 우수사례 발간 등 데이터기반행정 인지도 제고 노력

□ 추진내용

○

-

□ 추진성과

○

-

3 기타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기타 노력

□ 추진내용

○

-

□ 추진성과

○

-